

대만 최신 식품위생규정과 한국식품 수입요건

2014. 1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Ⅰ CHAPTER 1 Ⅰ 대만 농산물, 가공식품 수입 개요

1. 수입 농산물 관할기관 집행 개요 3
2. 수입 가공식품 관할기관 집행 개요 3
3.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신고 절차 3

Ⅰ CHAPTER 2 Ⅰ 최근 3년 대만 식품안전문제 사례 분석

1. 유통중인 식품에서 가소제 검출 13
2. 한국 굴,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검출되어 수입 중지 14
3. 한국 대추, 잔류 농약 검출되어 반송 및 처분 15
4. A라면, 스프에서 발암물질 검출되어 라면 수출시장 타격 16
5. 한국사과 농약잔류량 기준치 완화 17
6. 공업용 재료 첨가한 전분제품 유통 18
7. 쌍학(雙鶴), 발암물질 첨가된 간장 판매 19
8. 해조류 식품 위생기준법규 수정 19
9. 육류가 첨가된 가공품 수입 검역조건 강화 20
10. 제과점 팡달인(胖達人), “천연효모” 허위광고 20
11. 시판 벌꿀 75% 인공제조한 가짜 벌꿀 21
12. 저가 식용유와 클로로필린을 불법 첨가한 올리브유 판매 21
13. 덩왕마라귀(鼎王麻辣鍋), 화학첨가물과 인공조미료로 육수 제조 22
14. 폐기된 식용유 기름 판매 23

Ⅰ CHAPTER 3 Ⅰ 수입요건에 따른 한국 농식품 현황과 경쟁 전략

1. 한국 농산물목별 수입요건 27
2. 가공식품별 수입 요건 34
3. 유전자재조합식품 수입 현황 48

Ⅰ CHAPTER 4 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수입시 주의사항

- 1. 식품표시 규정 53
- 2. 식품첨가물 규정 64
- 3. 잔류농약 규정 65
- 4. 유전자재조합식품 규정 65
- 5. GMP, GHP, CNS 인증제도 67

Ⅰ CHAPTER 5 Ⅰ 식품 안전 등록 시스템

- 1. 시스템 소개 73
- 2. 등록방식 73
- 3. 주의사항 74

Ⅰ 참고자료 및 사이트 Ⅰ 77

aT기획조사 2014 - 대만 편

대만 최신 식품위생규정과 한국식품 수입요건

CHAPTER

1

대만 농산품, 가공식품 수입 개요

01. 수입 농산품 관할기관 집행 개요

02. 수입 가공식품 관할기관 집행 개요

03. 대만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신고 절차

1 수입 농산물 관할기관 집행 개요

- 대만의 농림수산물 및 수입 농산품을 관할하는 중앙 정부기관은 행정원 농업위원회로 산하 동식물 방역검역국은 수입 동식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 각 항구, 국제공항에 수출입 동식물 검역 사무소에서 동식물 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동식물 방역검역국의 검역관은 관련 검역 규정에 의거 식물, 식물 제품, 토양 및 배지를 검사한다. 법적으로 허가된(혹은 금지하지 않은) 식물과 식물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현장 검역 시 병충해가 발견되지 않으면 즉시 수입식물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식물과 식물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검역 결과 유해생물이 발견될 경우, 수입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검역관이 식물 또는 식물제품을 용기 등을 함께 소독한 뒤 수입식물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품을 처분하거나 반송 한다.

2 수입 가공식품 관할기관 집행 개요

- 일반 가공식품이란 농림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보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성질을 가진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그의 형태를 변경한 식품이다. 식품을 감독하는 중앙 관할기관은 위생복지부 식품의약품 관리서이다. 식품의약품 관리서는 외국 수입 식품을 관리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기 도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및 식품용 세제 등 세부항목 리스크 평가를 통해 수입품이 현행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필요 시 농업위원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관리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첨부자료 1)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가공식품을 세관에서 검역하며 식품수입업자에게 검역 문서를 요구한다. 검역이 통

과되면 식품의약품관리서에서 식품수입허가증을 발급하고 현장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기간 내에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개선하지 않을 경우 수입품을 처분하거나 반송한다.

3 대만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신고 절차

1) 수입규정

- 일반 통관절차 외에 각 항목 제품이 준수해야 할 수입규정이 있으며, 해당 품목의 수입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통상적인 농산품과 가공식품의 수입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1-1. 통상적인 농산품 및 가공식품의 수입시 적용규정

수입규정	중국어 규정 설명 (한국어 번역)
F01	수입 상품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규정”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의약품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각주: 관련 규정은 위생복지부 식품·의약품 관리서에 문의】
F02	본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 중 식품이거나 식품이 포함될 경우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규정”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의약품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각주: 관련 규정은 위생복지부 식품·의약품 관리서에 문의】
B01	수입 시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이 규정한 “검역을 거쳐야 할 동식물 품목표”와 관련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각주: 관련 규정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 또는 해당 기관 사이트 http://www.baphiq.gov.tw 에 문의】
463	1. 재정부에서 발급한 담배·주류 수입업 허가증의 사본이나 재정부의 승인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인용 담배나 주류 수입 시, 수량이 아래 규정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허가증이나 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담배: 쉘런 5 보루 (1,000개비), 엽쉘런 125개비, 담뱃잎 5 파운드 2) 주류: 5 리터 2. 수입 후 분리포장할 담배일 경우, 세관신고할 때 업자는 그의 용도를 기입해야 하며 생산국 정부나 해당 국가 정부가 승인한 협회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입규정	중국어 규정 설명 (한국어 번역)
501	위생복지부의 승인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502	수입 견제품: 중약상(中药商) 허가증 (또는 위생복지부에서 발급한 약품제조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품명에 중약재인 것과 중국어 약재명을 표시해야 한다. 견제품이 아닐 경우, 위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513	수입 중약재는 502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약재 용도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경우 502규정을 따르지 않고 “비중약재용(非中药用)”으로 표시해야 한다.
H02	본 항목 중 일부 중약재는 위생복지부에서 공포한 수입 시 검역을 거쳐야 할 중약재이므로 위생복지부 식품·의약품관리서가 발급한 수입허가증으로 수입 통보를 해야 한다.
MW0	중국산 물품 수입 금지.
MP1	중국산 물품은 조건부 허가 수입이 적용되며 “중국산 물품 조건부 허가수입 항목 및 수입 관리 법규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산 물품 조건부 허가수입 항목 및 수입 관리 법규표”에 의하면, “MX X”표시가 있는 물품은 국제무역국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MX X”표시가 없는 물품은 일반 비자규정을 따라야 한다.
W01	수입 주류는 재정부와 위생복지부에서 공포한 “수입 주류 검역규정”을 따라야 하며 재정부에 수입 검역을 신청해야 한다.

(1) 수입 절차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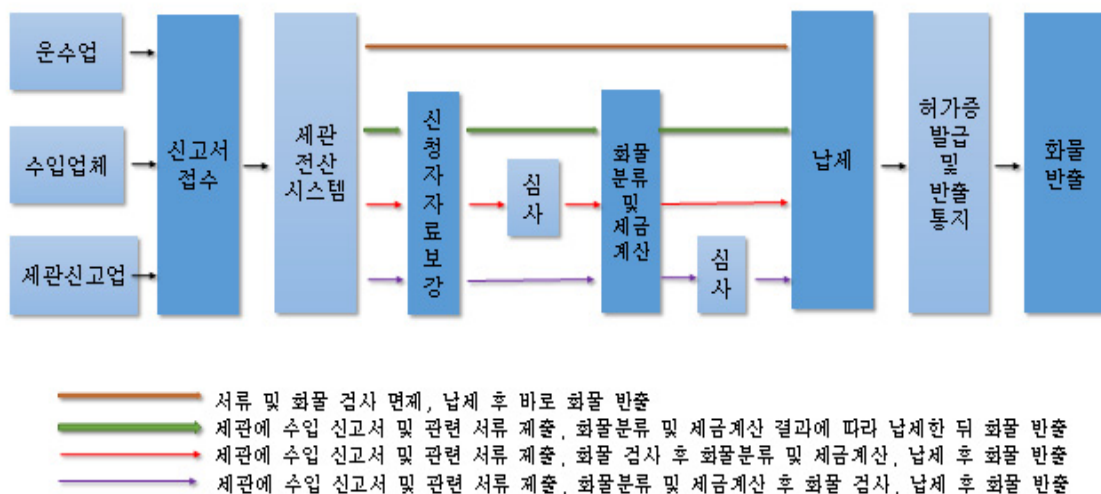


그림 1-1. 수입품 세관신고 및 심사신고 절차도

- 위 수입절차는 수입 물품 또는 식품의 통관 절차로 일반 수입 물품(식품)은 운송 수단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15일 내에 세관신고를 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매일 200TWD 연체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수입업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통관업체나 운송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수입 식품의 수출국이 어느 나라든 식품 수입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①신고서 접수, ②검사, ③물품분류 및 세금계산, ④납세, ⑤물품반출까지 5단계 절차를 거친다.

(2) 수입신고서 접수

- 관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자는 수입물품 내용을 세관신고 할 때 아래와 같은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① 화물 수입 신고서, 송장 첨부
 -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④ 기타 수입 시 필요한 문서 (원산지 증명서, 농약 허가증, 세관이 기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문서나 타 기관 심사에 필요한 증명문서 등)
 - ⑤ 관련 수입규정에 제시된 증명서(예: 수입규정 B01)
- 세관 전산 시스템은 세관신고자가 제공한 세관 문서에 의거 국제협력통보창구(国际互助通报窗口)를 통해 해당 물품의 통관 방식을 결정한다.

(3) 수입검사

- 외국 수입물품의 세관 전산 시스템 판정 결과는 아래 3가지로 분류한다.
 - ① C1인 경우, 문서 심사와 화물 심사 없이 납세 후 바로 물품을 반출한다(예: 음향, 자동차, 컵 등).
 - ② C2인 경우, 신고인은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물품분류 및 세금계산 절차를 거친다. 절차가 끝난 뒤 신고인이 관세를 납부하면 물품이 반출된다(VCD, 서적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품).

- ③ C3인 경우, 신고인은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물품검사, 물품분류 및 세금계산 절차를 거친다. 절차가 끝난 뒤 신고인이 관세를 납부하면 물품이 반출된다(예: 식품, 식품첨가물 등). (C3는 2가지 결과가 있는데 먼저 물품을 검사한 뒤 물품분류 및 세금계산 절차를 거치거나 먼저 물품분류 및 세금계산 절차를 거친 뒤 물품검사를 하는 방식이 있다. 두 결과는 세관 처리절차와 물품 상태에 따라 판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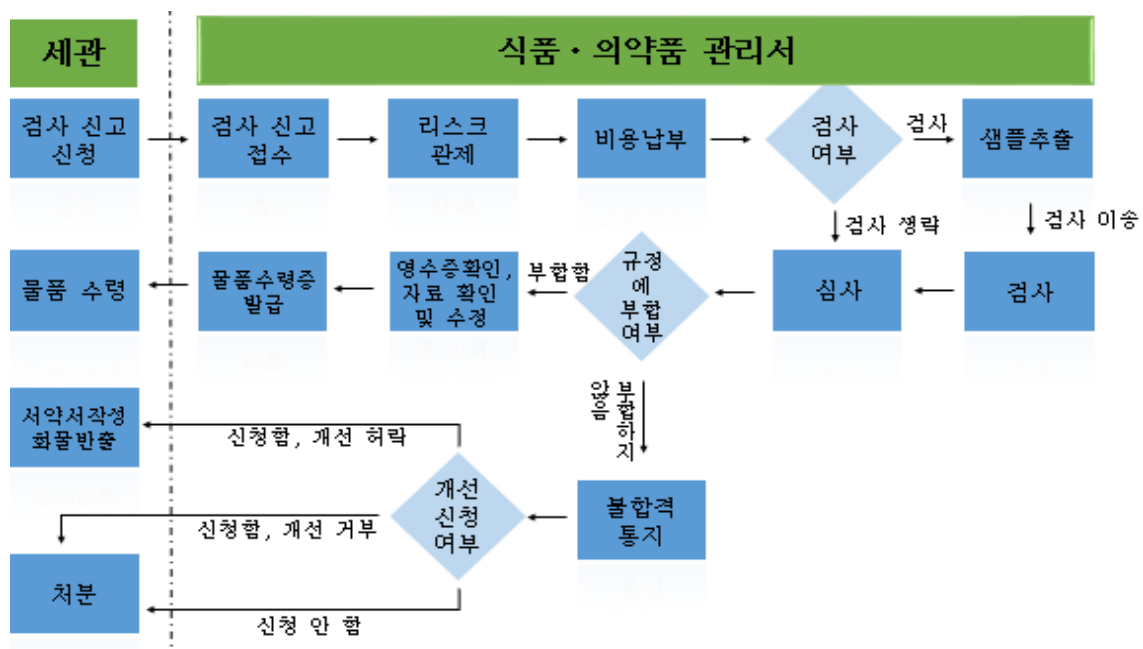


그림 1-2. 식품수입 검사 절차도

- 외국 식품 수입의 통관 방식은 위 3가지 방식이 있음에도 철저한 검역을 위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주로 C3수속을 거친다. 심사 방식은 상시 샘플 추출 검사, 강화된 샘플 추출 검사와 일반 샘플 추출 검사로 분류된다.

① 상시 샘플 추출 검사

- 100% 검사로 검사 신청한 제품을 매번 현장에서 확인하고 샘플 추출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는 매번 샘플 추출 검사하는 방식으로 샘플추출율은 50%를 넘지 않는다.

(가) 제품의 위생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데이터나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인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 (나) 식품·의약품 관리서에서 발표된 제품 년도 검역 계획서 중 상시 샘플 추출 검사 식품으로 지정된 식품.
- (다) 검사 신고 의무자가 지난 번에 수입한 식품인 것으로 강화된 샘플 추출 검사 물품의 원산지, 물품 분류 코드와 같으며 검사 결과 불합격인 식품.
- (라) 검사기관으로부터 상시 샘플 추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식품.

② 강화된 샘플 추출 검사

- 검사 확률은 20~50%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컨테이너 10개가 있으면 이 컨테이너들을 검사하게 될 확률은 20~50%이고, 다음에 컨테이너가 12개 일 경우에도 컨테이너의 검사 확률은 20~50%다. 강화된 샘플 추출 검사를 거쳐야 할 물품은 아래와 같은 필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가) 검역 계획서 중 강화된 샘플 추출 검사로 분류된 식품

(나) 원래 상시 샘플 추출 검사를 받아야 할 제품이 강화된 샘플 추출 검사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검사 신고 의무자는 아래 조건에 전부 부합해야 한다.

- ✓ 동일한 검사 신고 의무자는 원산지와 물품분류코드가 같은 제품을 연속 5번 수입해야 하며 제품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 또한, 동일한 검사 신고 의무자는 지난번 검사 결과에서 불합격인 제품의 3배 또는 3배 이상의 물품량을 수입해야 한다.
- ✓ 일반 샘플 추출 검사: 검사될 확률은 2~10%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컨테이너 10개가 있으면 이 컨테이너들을 검사하게 될 확률은 2~10%이고, 다음에 컨테이너가 12개일 경우에도 컨테이너 검사 확률은 2~10%다. 일반 샘플 추출 검사를 거쳐야 할 물품은 아래와 같은 필수 조건을 가지고 있다.

③ 일반 샘플 추출 검사

- 검사 확률은 2~10%다. 예를 들어 이번에 컨테이너 10개가 있으면 이 컨테이너들을 검사하게 될 확률은 2~10%이고, 다음에 컨테이너가 12개일 경우에도 컨테이너 검사 확률은 2~10%다. 일반 샘플 추출 검사를 거쳐야 할 물품은 아래와 같은 필수 조건을 가지고 있다.

- (가) 상시 샘플 추출 검사나 강화된 샘플 추출 검사를 받지 않는 물품.
- (나) 원래 강화된 샘플 추출 검사를 거쳐야 할 제품이 일반 샘플 추출 검사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검사 신고 의무자는 아래 조건에 전부 부합해야 한다.
 - ✓ 동일한 검사 신고 의무자는 원산지와 물품분류코드가 같은 제품을 연속 5번 수입해야 하며 제품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 또한, 동일한 검사 신고 의무자는 지난번 검사 결과에서 불합격인 제품의 3배 또는 3배 이상의 물품량을 수입해야 한다.

- 일부 컨테이너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 중 샘플을 추출하기 어렵거나 검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부패 또는 변질하기 쉬운 식품은 신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한 뒤 우선반출(先行放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확인할 필요에 대비하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서약서 작성 뒤 물품을 반출하는 방식이며 강화된 샘플 추출 검사를 받아야 할 식품이 이런 방식에 적합하다. 상시 샘플 추출 검사를 받아야 할 제품은 유치해야 한다.

2) 물품분류 및 세금계산

-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은 해당 물품과 관련된 세칙(稅則) 세호(稅號)에 의거하여 세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물품가격과 양을 계산한 뒤 판정된 물품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농산품과 그 조제품 중 일부 물품은 관세할당이 적용되며 이에 관해 관세할당 실시규정(첨부자료 2)을 참조할 수 있다. 관세할당은 대만 산업 보호와 단계적 시장개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수입국은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 2013년도 관세할당에 해당되는 품목은 팔, 액체 우유, 땅콩, 마늘, 말린 버섯, 말린 원추리, 야자, 빈랑, 파인애플, 망고, 유자, 계원육, 녹용, 동양배(東方梨), 바나나와 식용 쌀 등이 있다. 관세할당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세관에 통관수입을 신청하면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할당량을 초과하면 수입

은 가능하나 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할당량 내의 물품”은 세관수입세칙(첨부자료 3) 제98장 저수입세율을, “할당량 초과 물품”은 수입은 가능하나 일반 물품 수입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3) 납세

- 물품분류 및 세금계산 절차를 거친 후 신고인은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판정한 세액을 납부한다.

4) 물품 수령

- 본 절차는 기납세 품목의 수입신고서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단계이다. 문제가 없으면 통관 날인이 찍힌 화물수령증으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aT기획조사 2014 - 대만 편

대만 최신 식품위생규정과 한국식품 수입요건

CHAPTER

2

최근 3년 대만 식품안전문제 사례 분석

01. 유통중인 식품에서 가소제 검출
02. 한국 굴,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검출되어 수입 중지
03. 한국 대추, 잔류 농약 검출되어 반송 및 처분
04. A라면, 스프에서 발암물질 검출되어 라면 수출시장 타격
05. 한국사과 농약잔류량 기준치 완화
06. 공업용 재료 첨가한 전분제품 유통
07. 쌍학(雙鶴), 발암물질 첨가된 간장 판매
08. 해조류 식품 위생기준법규 수정
09. 육류가 첨가된 가공품 수입 검역조건 강화
10. 제과점 팡달인(胖達人), “천연효모” 허위광고
11. 시판 벌꿀 75% 인공제조한 가짜 벌꿀
12. 저가 식용유와 클로로필린을 불법 첨가한 올리브유 판매
13. 덩왕마라궤(鼎王麻辣鍋), 화학첨가물과 인공조미료로 육수 제조
14. 폐기된 식용유 기름 판매

- 본 장에서는 2011년 이후 대만에서 일어난 큰 식품안전 사건을 분석하고 사건 발생 시간, 사건 내용 및 대만 정부의 대처방안, 적발, 배상, 벌금 등 처리방식을 다루었다. 또한, 사례마다 한국에서 관련 제품을 대만으로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해당 사건에 대한 대만 정부의 입법 예고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수출업체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 수출업체는 자사가 수출하는 제품과 유사한 대만 식품안전 사례분석을 알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사례에서는 해당 제품에 관한 대만 근거법규를 제시하고 있다. 의문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을 경우 표에 제시된 법규 조항의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고 대만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1 유통중인 식품에서 가소제 검출

발 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2011년 5월	1.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서 가소제¹⁾ 검출됨 2. 조사 결과, 원재료 공급업체 위선향료 회사(昱伸香料公司)와 빈한회사(賓漢公司)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합법 식품첨가물 “불투명제²⁾”에 팜 오일³⁾ 대신 저가 공업 가소제 DEHP, DINP(비준용(非准用) 식품첨가물)를 첨가함 3. 원재료 공급업체는 공업가소제를 첨가한 불투명제를 유명 식품업체에 납품 성상전(盛香珍), 대만 비피도(比菲多), 창경생물과학기술(长庚生物科技), 통일기업(統一企业), 위에스(悅氏)와 센차다우(鮮茶道)음료체인점 등 업체가 포함되므로 큰 여파를 일으킴 ▶ “불투명제”는 일종의 합법적인 식품첨가물로 주스, 음료 등 식품에 다량 첨가되며, 일반적으로 불투명제는 아라비아고무⁴⁾, 에멀션⁵⁾, 팜오일과 다양한 식품첨가물로 혼합 제조됨	1. 위생서는 전면조사를 하고 3천 톤에 달하는 불법 제품을 몰수 및 처분함 또한, 불법 불투명제를 사용한 식품업체한테 즉시 이러한 물품을 회수하고 통보하기를 요구함 2. 2011/5/27부터 모든 “운동음료”, “주스”, “차음료”, “잼, 시럽이나 젤리”, “캡슐·정제·가루제품” 등 식품 중 불투명제가 첨가된 식품은 3일 내에 안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매 금지되고 가중처벌됨 3. 불법업체는 영업 중지 및 벌금 3~15만TWD 징수함 (당시 구법 제11조, 35조) 근거법규: 1.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사용량 및 규격 기준(첨부자료4) 2.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0관 (첨부자료1)	파급 : 한국산 시럽 등 식품 및 포장 용기에 첨가된 가소제 관련 대만 규정과의 부합 여부 에 주의 대응전략 : 1. 포장상품 또는 식품 등 대만 소비자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예: 가소제의 검사 방식) 2. 한국 식품의 안전성과 검사에 관해 설명하여 대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음

발 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 DEHP는 플라스틱 재료에 흔히 상용되는 가소제이며 환경보호서(环境保护署)로부터 제4분류 독성 화학물질로 발표됨 대만 “식기도구·용기·포장 위생기준”에서도 플라스틱류 중 DEHP의 용출이 1.5ppm을 초과할 경우 식품에 첨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현재 각국에서 허용하는 60kg 성인의 하루 섭취량은 1.2~8.4mg임 ▶ DINP-와DEHP는 프탈산계⁶⁾의 화학물질이고 물리·화학 성질이 비슷하며 흔히 플라스틱 재료에 사용되는 가소제임 두 물질의 독성은 낮고 환경보호서로부터 독성 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식품에 첨가 불가함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52조 제1항 제1관, 제44조 제1항 제2관, 제49조(첨부자료1)	

2

한국 굴,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검출되어 수입 중지

발 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2012년 6월	대만 체인 레스토랑 상스천국(飡食天堂)의 여러 지점에서 생굴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건 발생함. 조사 결과, 생굴은 한국산이며 중독 원인은 병원성 미생물(노로바이러스 ⁷⁾)로 나타남	- 회수, 검사 및 전면검사: 사건 발생 후 대만 위생서는 2012년 4~6월에 수입한 한국 생굴을 회수하고 한국산 생굴 제품과 기타 조개류의 상시 세관의 샘플 추출 검사 및 제품 관제를 시행함 - 처분 : 조사 결과, 한국산 생굴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됨. 각 현과 시의 위생국(衛生局)은 본법 제52조 제1항 제1관에 따라 제품 처분함 - 벌금: 한국 생굴 수입업체는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관(첨부자료1)을 위반한 것으로 본법 제44조 제1항 제2관에 따라 위생국으로 부터 벌금 부과 - 통보: 한국 정부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수산물 관리 강화를 요구함 오염실태, 처리현황 및 대처방안 등 정보 제공 요구 ▶ 본 안건으로 법을 수정하지는 않음	파급 : 본 사건은 국제 식품안전 사건인 것으로 한국산 굴의 이미지에 큰 타격 입힘 대만(2012) 외에, 굴 노로바이러스는 뉴질랜드(2007)와 미국(2011)에서도 문제가 되었음 한국 굴의 오염 문제로 국제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함 대응전략: - 정부의 대처방안을 대중에게 알림 - 조사 결과, 본 사건은 인체 배설물로 인한 오염 사건임

- 1) Plasticizer
- 2) Cloudifier
- 3) palm oil
- 4) Gum arabic
- 5) emulsion
- 6) Phthalates

발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근거법규: 1. 현행법(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에 의하면, 각국 식품은 수입하기 전에 검사 받아야 함 2. 수입 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16조를 위반할 경우, 본법 제44조에 따라 식품수입업체로부터 벌금 징수함 3. 제52조에 따라 각 현, 시, 직할시의 위생국으로부터 제품 회수, 처분함 4.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개별 식중독 사건 발생 시 정부는 업체한테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함 규정기준: 1. 식약처(냉동굴-수산 동물류 위생기준-조개류) 2. 활굴-방검국 (활갑각류 및 연체동물 수입 검역조건)	한국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위 화장실을 증설하였고 약 2,500개 어선에 화장실을 설치함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마스크를 통해 알려 한국 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음

3 한국 대추, 잔류 농약 검출되어 반송 및 처분

발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2012년 9월	한국의 A그룹은 한국산 말린 대추를 대만으로 수출하여 통관 예정이었으나 클로르헥시나피르⁸⁾ 0.11ppm 및 플루페녹수론⁹⁾ 0.08ppm이 검출되어 대만 농약 잔류량 허가기준(첨부자료5)에 부합하지 않아 반송됨	1. 제품 반송 및 수입 금지함 근거법규: 1.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첨부자료1) 2. 농약 잔류량 허가 기준 (첨부자료5) 3. 식품안전위생관리법제15조 제1항 제5관(첨부자료1)	파급 : 한국산 말린 대추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 한국 건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 대응전략: 한국 건제품의 제조과정 및 농약 검사에 관해 설명하여 수출 건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

7) Norovirus

8) Chlorofenapyr

9) Flufenoxuron

4

A라면, 스프에서 발암물질 검출되어 라면 수출시장 타격

발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2012년 10월	한국 A사의 라면 중 6개 제품은 발암물질[벤조피렌 ¹⁰⁾]이 첨가된 것으로 보도됨 대만 수입업체는 수입한 두 개 제품을 즉시 정부에 보내 검사받음	1. 대만에서는 아직 벤조피렌(Benzopyrene)의 허가량을 규정하지 않아 UN의 일반식품 허가치 5ppb와 WHO의 허가치 10ppb를 기준으로 하여 검사함 검사 결과, 허가량을 초과하지 않아 위생서는 회수하지 않음으로 판정함 2. 벤조피렌(Benzopyrene) 잔류 허가량 규정안 수립 착수함 근거법규: 1. 대만은 아직 벤조피렌 허가량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우선 UN에서 정한 영유아식품 허가치 1ppb와 일반식품 허가치 5ppb로 정함 2.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3관(첨부자료1) 3.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52조 제1항 제1관, 제44조 제1항 제2관, 제49조(첨부자료1)	파급 : 한국 라면은 다수 대만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음 결론적으로 A사의 라면은 회수조치 되지 않았으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렸고 과정에 대한 정보가 복잡했으므로 일부 대만 소비자는 아직도 한국 라면에 독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 대응전략 : 1. 제조업체는 사안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브랜드 이미지의 타격을 최소화해야 함 A사의 경우 스프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음 2. 한국 정부기관은 진지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된 입장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 관계당국은 이미 6월에 본 사건에 대해 알았지만 바로 제품을 회수하지 않았고 11월이 돼서야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음. 해외 시장 신뢰도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3. 신속한 수입업체의 발언 통제 수입업체는 즉각적으로 수입한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 본 사건은 A사의 설명이 부족해서 내용이 서로 다른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소비자는 혼란을 겪었음. 그로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도 남아있음

5 한국사과 농약잔류량 기준치 완화

발 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2012년 11월	2012년, 위생복지부 식품·의약품 관리서는 한국이 신청한 11가지 사과 농약과 잔류허가량 기준을 통과시킴. 이외에 두 가지 농약은 아직 심사 중임 대만 국민은 대만 정부가 1.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너무 쉽게 농약의 사용을 허락하고 2. 국민의 건강을 희생해서 한국과의 무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김	식약서 농위회의 답변 : 1. 심사 결과는 국제기준에 의거, 한국에 맞춰 준 것은 아님 대만 정부는 국내외 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1인 하루 최고 섭취량 및 총량을 고려하여 농약의 사용량을 규정함 따라서 통과된 잔류량 기준은 한국뿐만 아닌 모든 수입국에 적용됨 2. 한국 신청 농약은 이미 다른 수입 농산품에 사용되고 있음 한국이 신청한 13개 농약은 새로 개발된 농약이 아닌 세계 각국에서 농작물에 사용 가능함으로 허가, 등록된 농약임 그 중, 4가지 농약: 디노테푸란¹¹⁾, 아세퀴노실¹²⁾, 아족시스트로빈¹³⁾, 플루아지남¹⁴⁾은 이미 대만에서 사과 농약으로 허가되었고 나머지 9가지는 사과에 사용되지 않을 뿐, 사용은 허가됨 (예: 스피로디크로펜¹⁵⁾은 이미 5년 전에 파파야, 참외에 사용 가능함으로 등록됨) 3. 13가지 신청 결과, 11가지 통과함 현재 통과한 11가지 농약의 허용량 기준은 한국에서 제공한 안전 평가 자료에 근거하고 국제기준, 대만 국민의 식습관 및 대만의 농약 잔류 총량을 참조하여 정한 것임으로 상기 농약의 통과 결과 유지함 근거법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5관(첨부자료1) 규정기준 : 방검국(수입 신선 과실 검역규정) 식약서 (농약 잔류 허가량 기준표1~4 (첨부자료5))	파급 : 1. 대만 소비자는 신청 결과를 한국과의 무역협상 조건으로 여김 농업위원회가 통과시킨 농약 신청 기준은 한국이 신청한 수치보다 낮아 소비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킴 2. 과다한 농약 사용 신청으로 반대 의견 확대 정보가 없고 과다한 약품에 발암성 살충제가 첨가되어 소비자는 불안을 일으킴 3. 사과 수입량 감소됨 2009년 한국 사과 해외 수출량의 90%는 대만이 차지했는데 한국 사과에서 기준 초과된 농약량이 검출되면서 대만 수출량이 현저하게 하락함 이처럼 대만 소비자는 본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음 대응전략 : 1. 대만 소비자에 대한 분석 강화 대만인은 완화된 농약 심사 통과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장기간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및 한국 농산품의 재배 환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정적으로 여기고 한국 농산품의 수출량에 영향을 끼침 한국 관련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대만 소비자의 제품 인지와 소비자 형태 분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장기간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 구축 필요 장기 마케팅 전략을 통해 한국 농산품의 재배 및 제조 과정을 알리고 한국 농산품 관련 기업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함

10) Benzopyrene

11) Dinotefuran

6 공업용 재료 첨가한 전분제품 유통

발 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2013년 5월	다수 대만 식품 제조업체는 식감을 향상하기 위해 무수 말레인산 ¹²⁾ 을 첨가하여 화학 전분을 제조하고 대수 하청 전분 식품 제조업체에 판매했다는 사실이 보도됨. 관련식품은 녹말가루, 고구마 가루, 치킨가루, 반타우(板條), 로우위엔(肉圓), 어묵, 타피오카펄, 도우화(豆花), 편귀(粉粿), 위위안(芋圓), 디과위안(地瓜圓) 등 대량 쫄깃한 식감의 음식에 첨가되어 파급영향이 매우 컸음. 해당 물질은 위생서가 허가한 21가지 식용 화학 제조 전분도 아니고 준용(准用) 식품첨가물도 아닌, 본래 식품 포장이나 접착제에 사용되는 공업 재료임 식품에서의 말레인산 ¹⁷⁾ 생성을 일으켜서 인체 건강을 위협함	1. 위생서 조사 결과, “무수말레인산”의 제조업체 한 곳과 판매업체 3곳, 무수말레인산 화학 전분의 제조업체 8곳과 판매업체 19곳이 조사를 받았고 약 총 239톤의 제품 몰수, 처분 및 벌금 징수함 2. 2013.06.01부터 반타우(板條), 로우위엔(肉圓), 어묵, 타피오카펄, 도우화(豆花), 편귀(粉粿), 위위안(芋圓), 디과위안(地瓜圓) 등 8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은 눈에 띄는 곳에 원재료와 안전증명을 표시해야 함 3. 원청업체 관리 강화 예: 식품첨가물의 삼분책략(三分策略) (수입분류, 제조분구, 판매분업 (進口分流, 製造分區, 販賣分業)), 강제등록제도, 화학물질 유통 감시 4.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6월 19일에 식품위생관리법 수정함: 총 60조 수정됨 (1) 식품업 종업원의 위생관리 강화: 식품 업체는 위생관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전문가를 고용하여 식품위생 안전 관련 업무를 실행해야 함(제11조, 제12조) (2) 식품업체 강제등록제도 시행, 등록 플랫폼 설치, 식품첨가물의 검사 결과 등록 강화: 제8조, 제22조 (3) 식품 추적 시스템 설립: 제9조 (4) 처벌 가중하고 [중앙 주관기관이 허가하지 않은 첨가물을 첨가함]을 금지 행위로 등록함: 제44조~49조, 제15조 제1항 제10관 근거법규: 1.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사용량 및 규격 기준] (첨부자료4)에서 허가하지 않은 무수말레인산을 사용하여 식용 화학전분을 제조한 것으로 현행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0관 위반함 2. 동법 제52조 제1항 제1관에 따라 규정 위반 제품을 몰수 및 처분함 3. 제44조 제1항 제2관에 따라 벌금 6~1,500만 TWD 부과함 4. 피해가 심할 경우, 영업중지 또는 폐업 처분 가능 5. 또한, 제49조에 따라 형벌 내림	파급 : 한국 농식품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대응전략 : 가공식품 수입 시 대만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분 등 성분의 사용을 주의함

12) Acequinocyl

13) Azoxystrobin

14) Fluazinam

15) Spirodiclofen

7

쌍학(雙鶴), 발암물질 첨가된 간장 판매

발 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2013년 5월	대만 이창(一江)식품회사의 간장은 식당, 야시장에서 대량 사용됨 그러나 최근 9개 제품 중에서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¹⁸⁾와[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¹⁹⁾이 검출된 사실이 보도됨. 전자는 간장에 첨가된 카라멜색소가 가공 과정에서 생성한 화합물이며 제한량을 초과하지 않음. 후자도 화학적인 가공 과정에서 생긴 화합물로 규정보다 0.4ppm 초과함. 후자의 장기 복용은 인체에 유해함.	1. 위생서 조사 결과, 이창(一江)식품회사의 9개 제품은 규정 위반으로 확인됨 위생서는 제품 회수(기준 위반 간장 총 4,134통, 20,670리터) 및 기한 내 개선을 요구함 또한, 벌금 3~15만TWD 징수 2. 각종 식품에 첨가되는 카라멜색소 사용 허가량이 합리적인지 재평가함 근거법규: 1. 현행법에 의하면, 본 사건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첨부자료1)과 간장류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52조 제1항 제2관에 따라 규정 위반 제품을 몰수 및 처분해야 함 2. 제48조에 따라 기간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벌금 3~300만 TWD 징수함 3. 피해가 심할 경우, 영업중지 또는 폐업 처분 가능 4. 또한, 제49조에 따라 형벌 내림	파급영향 : 한국 농식품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 대응전략 : 간장, 김치,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의 양조 및 조림 식품은 점점 대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음. 이러한 제품은 양조나 보존 과정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조과정 및 검사방식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음. 일본 양조 및 조림식품은 TV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방송되어 대만 소비자의 신뢰도도 높고 이해도가 깊음. 한국도 여러 방식을 통해 제품의 제조 방식과 과정을 알리고 한국 양조 제품의 특색을 극대화하여 대만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8

해조류 식품 위생기준법규 수정

“조류 식품 위생기준” 수정 (첨부자료6)

- 본 사례는 식품안전 사건으로 인해 법규를 수정한 것이 아니며, 수정 원인은 아래와 같음

16) maleic anhydride

17) Maleic acid

18) 4-Methylimidazole

19) 3-monochloro-1,2-propanediol, 3-MCPD

- ① 조류는 오염물질에 노출된 위험성이 높은 제품으로 관련 식품의 관리 강화 필요
- ② 현재 상황에 맞게 [2001년 식용 조류 위생기준]을 수정, 갱신함

9 육류가 첨가된 가공품 수입 검역조건 강화

“신선 육류 위생기준”수정 (첨부자료7)

- 본 사례는 식품안전 사건으로 인해 법규를 수정한 것이 아니며, 수정 원인은 아래와 같음
 - ① 국제기준의 정신에 따라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함
 - ② 현대 사회 약물의 사용과 잔류물 종류가 많아짐을 감안하여 수정함

10 제과점 팡달인(胖達人), “천연효모” 허위광고

발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2013년 8월	위생서 조사 결과, 대만 체인형 제과점 팡달인(胖達人)은 9가지 인공 향료를 사용하면서 장기간 순수 천연효모 사용을 광고하여 고가로 제품을 판매함. 허위광고로 판정됨.	팡달인은 허위광고로 행정벌금 18만 TWD 부과 받음. 그 후 내부자거래로 자본금이 감소하여 모든 팡달인 가게 폐업됨 근거법규 : 1. 제품에 허위광고, 과장된 광고, 오해 받기 쉬운 표시 등이 있는 경우, 식안법 제28조에 따라 벌금 부과함 2. 제52조 제1항 제3관에 따라 기간 내에 회수 및 개선하지 않으면 처분함	파급영향 : 한국 농식품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 대응전략: 1. 한국 농식품 판매 시, 부실표시나 허위광고 등 문제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함 2. 허위광고는 식안법 외에 대만 형법도 위반하는 것으로 수입업체는 형사 처분 받을 수 있음에 주의 필요

11 시판 벌꿀 75% 인공제조한 가짜 벌꿀

발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2013년 9월	조사 결과, 대다수 시판 벌꿀은 “양봉장”에서 수확한 진짜 벌꿀이 아닌 “공장”에서 인공 전화당에 향료와 색소를 첨가해서 순수 벌꿀로 가칭한 것으로 드러남.	현행법에 의하면 제품에 허위광고, 과장된 광고, 오해 받기 쉬운 표시 등이 있는 경우, 식안법 제28조에 따라 벌금 부과함. 또한, 제52조 제1항 제3관에 따라 기간 내에 회수 및 개선하지 않으면 처분함. 근거법규: 식안법 제28조 허위광고 형법 제339조 사기죄	파급영향 : 한국 수입 농식품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 대응전략 : 1. 한국 벌꿀 등 수입 시, 부실 표시나 허위광고 등 문제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광고, 표시 내용 및 순도 등을 주의함 2. 표시 부실 시, 식안법 외에 대만 형법도 위반하므로 수입업체는 형사 처분 받음.

12 저가 식용유와 클로로필린을 불법 첨가한 올리브유 판매

발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2013년 10월	다통창지(大統長基), 푸외이상(富味乡), 덩신제유(頂新制油), 싱린식품(興霖食品) 등과 같은 다수 대만 식품업체가 불법으로 클로로필린 ²⁰⁾ 을 첨가하거나 면실유, 해바라기유와 같은 저급 식용유를 첨가해서 올리브유, 땅콩유 등과 같은 고급 식용유로 위조함. 제품의 성분표시 규정 위반이 조사 결과 드러남.	식품 의약품 관리서와 각 현, 시 위생국은 1. 시판 식용 유류 제품의 표시 현황을 조사하고 표시가 부실한 경우 식안법 제52조에 따라 제품 회수 및 처분함. 2. 식안법 제52조 제1항 제1관에 따라 다통창지(大統長基), 푸외이상(富味乡) 등 회사의 모든 불법 유제품을 회수 및 처분하고 동법 제44조, 49조 또는 형법에 따라 벌금 부과함. 또한, 영업중지 또는 폐업 처분 명령 내림. 다통(大統) 대표이사는 12년 징역 선고 받고 벌금 3,800만 TWD 부과받음. 2. 모든 식용 유류 제품의 제조, 분리포장 및 수입 업체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조, 판매한 제품의 표시가 내용물과 일치하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3. 대만 클로로필린의 사용과 유통을 조사하여 클로로필린이 불법 첨가된 제품을 회수 및 처분하고 식안법 제44조에 따라 벌금 부과함	파급 : 한국 수입 농식품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 대응전략 : 1. 한국 유제품 수입 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광고표시 주의함. 2. 부실표시는 식안법 외에 대만 형법도 위반하므로 수입 업체는 형사 처분 받음. 3. 또한, 대만은 식품 안전 문제가 속출 되어 처벌이 가중 되고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함.

발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4.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49조(첨부자료1)를 수정하여 형벌과 벌금 가중함 5. 식품안전 관리 경비를 추가 부과함. 근거법규 : 1. 부실 표시: 식안법 제28조(첨부자료1) 및 형법 제339조 사기죄 위반함. 2. 불법으로 클로로필린 첨가: 식안법 제18조와 제15조 제1항 제10관 위반함. 3. 동법 제44조, 제49조에 따라 처벌. 제품에 가짜 식품 첨가 또는 위조 시: 식안법 제15조 위반, 동법 제52조에 따라 몰수 및 처분하고 제44조, 제49조에 따라 벌금 부과, 영업중지 또는 폐업 명령 내림. 또한, 형법 제339조 사기죄 위반함.	

13

딩왕마라귀(鼎王麻辣鍋), 화학첨가물과 인공조미료로 육수 제조

발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2014년 2월	대만 유명 체인 레스토랑 딩왕(鼎王)은 중약재, 채소와 과일로 우린 육수를 자랑했지만 실은 뼈육수 조미료, 다시다 등 십몇 가지 가루를 라면 스프 첨가하듯이 사용하여 육수를 제조한다고 신고 됨. 검사 결과, 허위광고가 사실인 것으로 판결됨.	위생서의 조사 결과, 딩왕(鼎王)은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함. 그러나 이는 허위광고로 식안법 제28조에 따라 벌금 징수함. 1. 본 안건으로 인해 법을 수정하지 않음. 2. 개별 사건이므로 정부는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음. 근거법규 : 1. 허위광고: 식안법 제28조 위반, 벌금 부과함. 2. 형법 제339조 사기죄.	파급영향 : 한국 농식품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 대응전략 : 위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허위광고의 문제임. 딩왕(鼎王)은 가격대가 높은 대만 유명 사부사부 체인점이므로 소비자의 기대와 기업의 행실 간에 큰 차이가 생겨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킴. 대만에서 개업할 한국 요식업체는 성실성을 중요시해야 하고 광고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14

폐기된 식용유 기름 판매

발 생	사건개요	정부의 대처방안 및 근거법규	파급 및 대응전략
2014년 9월	유류제품업체 창관기업(強冠企業)과 공옌통합마케팅회사(工研整合行銷公司) 등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된 식용유를 재료로 사용해서 제조된 악질 기름을 판매함 취안자(全家), 왕핀(王品) 등 다수 식품업체는 이러한 기름을 구매, 사용함. 썩은 기름이 첨가된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어 정부의 조사와 단속이 펼쳐짐.	식품·의약품 관리서와 각 현, 시 위생국은 - 창관기업(強冠企業)의 취안통(全統) 상주요우(香豬油)과 허장(合將) 상주요우(香豬油)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공장 현장에 있는 제품 및 용기 모두 처분함. - 식안법 제44조(첨부자료1)에 따라 창광(強冠)으로부터 벌금 5,000만 TWD를 징수하고 폐업 명령을 내리며 사법기관에 이송함. 또한, 썩은 기름 판매 혐의가 있는 창관(強冠)업체의 권례청(郭烈成)을 구속하고 그의 재산을 동결함. 235개 창관(強冠)의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제품의 유통을 조사함: 각 식품공장, 야시장, 노점상 등 요식업체 영업장소를 조사하고 판매된 불법 유류 제품과 악질 유류 제품으로 제조된 관련 제품을 전부 회수 및 처분함. 또한, 하청업체와 문제 있는 제품을 발표함. 9/5부터 하청업체가 식안법 제7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7조에 따라 벌금 부과함. 9/8부터 시판 제품이 재검사 받았을 때 악질 유류 제품 또는 악질 유류 제품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인 사실이 조사되면 식안법 제44조, 49조에 따라 처벌함. 근거법규 :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관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44조, 제49조에 따라 처벌함.(첨부자료1) - 식안법 제7조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47조에 따라 처벌함.	파급영향 : 한국 농식품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 대응전략 : - 한국산 유류 제품 수입 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광고표시 주의함 - 또한, 악질 유류 제품 판매는 식안법 외에 대만 형법도 위반하므로 수입 업체는 형사 처분 받음 - 또한, 대만은 식품안전 문제가 속출되어 처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함

aT기획조사 2014 - 대만 편

대만 최신 식품위생규정과 한국식품 수입요건

CHAPTER

3

수입요건에 따른 한국 농산품 경쟁 전략

01. 한국 농산품목별 수입요건

02. 가공식품별 수입 요건

03. 유전자재조합식품 수입 현황

1 한국 농산품목별 수입요건

- 현재 대만은 특정 국가의 농산품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공포하진 않았으나, 만약 수입 농산품의 검역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예를 들어 전염성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검출될 경우) 세관 진입은 가능하나 관련 제품의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 있다.
- 대표적인 한국산 수입식품인 사과, 배, 배추, 양배추, 무, 양파,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와 버섯류 등의 물품분류코드별로 수입규정을 알아보고, 대만 법률 및 규정 수정에 따른 한국 채소, 과일류의 수입규정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과, 배

표 3-1. 사과 수입코드 및 규정

C.C.C 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C D	제품명	Descripti 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08081000	00	2	신선한 사과	Fresh apples	KGM	20%	8%(GT) 10.6%(HN) 10.6%(NI) 0%(NZ) 0%(PA) 0%(SG) 10.6%(SV)	50%		B01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9/12 종료일자 : 9999/9
08133000	00	1	건조된 사과	Apples, dried	KGM	26%	2.6%(GT) 7.8%(HN) 7.8%(NI) 0%(NZ) 0%(PA) 20.8%(SG) 7.8%(SV)	40%		F0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9/12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사과와 배의 경우, 사과와 배의 관련 수입규정은 B01이다. 수입규정 B01에 속하는 제품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이 주관하여 수입 동식물 검역을 하므로 조제, 건조, 냉동 농산품은 검역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CCC코드가 08081000002인 “신선한 사과”는 수입 규정 B01을 준수해야 하고, 코드가 08133000001인 “건조된 사과”는 수입규정 B01이 아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가 주관하는 F01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해당 수입상품은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을 준수해야 한다. 수입규정MW0는 중국산 수입 금지품목이므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표 3-2. 배 수입코드 및 규정

C.C.C 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 품 명	Descrip 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 력 발 생 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08083090	00	9	신선한 기타 배	Other pears, fresh	KGM	NT\$49/ KGM	NT\$49/KGM(GT) NT\$49/KGM(HN) NT\$49/KGM(NI) NT\$42.9/KGM(NZ) NT\$49/KGM(PA) NT\$45.7/KGM(SG) NT\$49/KGM(SV)	NT\$58/ KGM	G	B01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13/11/29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13/11/29 종료일자 : 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수입 배는 수입규정 B01과 F01을 따라야 하므로 사과의 수입 조건과 같다. 한국 수입 사과와 배 모두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에서 정한 중점 관찰 대상이므로 한국 사과와 배를 수입할 때는 “검역을 거쳐야 할 동식물 품목표”(첨부자료9)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남한산(南韓産) 복숭아심식나방 숙주 생과일 수입 검역조건”(첨부자료10)과 관련 규정 사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한국 사과와 배의 포장규정에도 부합해야 대만 식품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2) 배추, 양배추

표 3-3. 배추, 양배추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 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07049010	00	8	신선한 또는 냉장된 배추	Chinese cabbage or PE-TSAI (Pak Choi), fresh or chilled	KGM	20%	8%(GT) 10.6%(HN) 10.6%(NI) 0%(NZ) 0%(PA) 18%(SG) 10.6%(SV)	40%		B01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98/07/01 종료일자 : 9999/99/99
07049090	00	1	신선 또는 냉장한 구경양배 추, 케일 및 이와 유사한 식용 브라시카	Kohlrabi, kale and similar edible brassica s, fresh or chilled	KGM	20%	2%(GT) 6%(HN) 10.6%(NI) 0%(NZ) 0%(PA) 18%(SG) 6%(SV)	32.5%		B01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98/07/01 종료일자 : 9999/99/99
07129090	90	2	건조된 기타 채소	Other vegetabl es, dried	KGM	20%	2%(GT) 6%(HN) 10.6%(NI) 0%(NZ) 0%(PA) 18%(SG) 6%(SV)	37.5%		B01 F0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91/09/11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한국 수입 배추는 큰 배추와 작은 배추로 나눌 수 있는데 작은 배추에 관한 규정은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B01과 F01이고, 큰 배추와 양배추는 상기 수입 규정 외에 한국 수입 큰 배추와 양배추 관련규정(첨부자료11)도 준수하고 한국정부 식물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 하며 운송 포장규정에도 부합해야 식품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3) 무, 양파, 토마토

표 3-4. 무, 양파, 토마토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 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07069000	10	6	신선 또는 냉장한 무	Radishes, fresh or chilled	KGM	20%	8%(GT) 10.6%(HN) 10.6%(NI) 0%(NZ) 0%(PA) 18%(SG) 10.6%(SV)	40%		B01 F01		관세 시행일자: 2009/12/02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9/12/01 종료일자 : 9999/99/99
07031010	00	6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	Onions, fresh or chilled	KGM	25%	2.5%(GT) 7.5%(HN) 0%(NI) 21.9%(NZ) 25%(PA) 22.5%(SG) 7.5%(SV)	42.5%		B01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2/06/01 종료일자 : 9999/99/99
07020000	00	1	신선 또는 냉장한 토마토	Tomatoes, fresh or chilled	KGM	10%	0%(GT) 0%(HN) 0%(NI) 7.5%(NZ) 0%(PA) 9%(SG) 0%(SV)	10%		B01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98/07/01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한국 수입 무, 양파와 토마토의 수입규정은 모두 B01과 F01이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이 세 가지 물품은 모두 대만 특별규정에 부합해야 하므로 한국정부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첨부하고 운송 포장규정에도 부합해야 식품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4) 딸기

표 3-5. 딸기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Exp. 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08101000	00	8	신선한 딸기	Fresh strawberr ies	KGM	20%	2%(GT) 6%(HN) 6%(NI) 17.5%(NZ) 0%(PA) 0%(SG) 6%(SV)	40%		B01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9/12 종료일자 : 9999/99/99
08111000	00	7	냉동딸기	Strawberr ies, frozen	KGM	20%	8%(GT) 10.6%(HN) 6%(NI) 15%(NZ) 0%(PA) 0%(SG) 10.6%(SV)	45%		F0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9/12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한국수입 딸기의 수입규정B01이다. 수입규정 B01에 속하는 제품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이 주관하여 수입 동식물 검역을 하므로 조제, 건조, 냉동 농산품은 검역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위 표에서와 같이 CCC코드가 08101000008인 “신선한 딸기”는 수입규정B01을 준수해야 하고, 코드가 08111000007인 “냉동딸기”는 수입규정 B01이 아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가 주관하는 F01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해당 수입상품은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대만으로 딸기를 수출할 때는 대만 특별규정에 부합해야 하므로 한국정부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첨부하고 운송 포장규정에도 부합해야 식품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5) 버섯류

표 3-6. 버섯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 CCC Codec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07095990	20	1	신선 또는 냉장한 팽이버섯	Golden mushrooms, fresh or chilled	KGM	24%	9,6%(GT) 12,8%(HN) 12,8%(NI) 18%(NZ) 0%(PA) 21,6%(SG) 12,8%(SV)	50%		B01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11/06/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11/06/01 종료일자 : 9999/99/99
07095990	10	3	신선 또는 냉장 새송이버섯	King oyster mushrooms, fresh or chilled	KGM	24%	9,6%(GT) 12,8%(HN) 12,8%(NI) 18%(NZ) 0%(PA) 21,6%(SG) 12,8%(SV)	50%		B01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6/08/07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6/08/07 종료일자 : 9999/99/99
20039090	90	6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으로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기타 버섯	Other mushroom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KGM	25%	10%(GT) 13,3%(HN) 13,3%(NI) 18,8%(NZ) 0%(PA) 22,5%(SG) 13,3%(SV)	40%		F01		관세 시행일자: 2004/08/09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4/08/09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한국 수입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은 수입규정F01과 B01 외에 대만 특별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한국정부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도 첨부하고 물품 학명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팽이버섯은 운송 포장규정에도 부합해야 식품수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버섯이 아닌 조제 버섯류 또는 저장된 버섯류일 경우,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CCC코드가 20039090906인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으로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기타 버섯”이므로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의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만 따르면 된다.

6) 인삼류(중약재)

표 3-7. 인삼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CCC Code		검사 코드 C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금징수 규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계코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12112010	00	7	지린인삼 (세근, 줄기, 깨진 인삼 포함)	Chie Lin ginseng (incl. fibrous roots, stems, broken ginseng)	KGM	5%	0%(GT) 0%(HN) 0%(NI) 0%(NZ) 0%(PA) 0%(SG) 0%(SV)	7.5%		502 B0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1998/04/08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9/12 종료일자: 9999/99/9
12112021	00	4	고려홍삼 (세근, 줄기, 깨진 인삼)	Radix ginseng rubra (Korea) (incl. fibrous roots, stems, broken ginseng)	KGM	1.5%	0%(GT) 0%(HN) 0%(NI) 0%(NZ) 0%(PA) 0%(SG) 0%(SV)	7.5%		502 B01		관세 시행일자: 2007/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1998/04/08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9/12 종료일자: 9999/99/99
12112022	00	3	고려백삼 (세근, 줄기, 깨진 인삼 포함)	Radix ginseng alba (Korea) (incl. fibrous roots, stems, broken ginseng)	KGM	1.5%	0%(GT) 0%(HN) 0%(NI) 0%(NZ) 0%(PA) 0%(SG) 0%(SV)	7.5%		502 B01		관세 시행일자: 2007/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1998/04/08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9/12 종료일자: 9999/99/99
12112090	00	0	기타 인삼근	Other ginseng roots	KGM	5%	0%(GT) 0%(HN) 0%(NI) 0%(NZ) 0%(PA) 0%(SG) 0%(SV)	7.5%		502 B0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1994/07/01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9/12 종료일자: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대만의 인삼수입규정은 중약재 수입 검사작업 규정 (첨부자료12)에 의거한 것이다.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홍삼과 백삼 모두 대응되는 CCC코드가 있지만 수삼은 대응되는 CCC코드가 없으므로 CCC코드 12112090000인 “기타 인삼근”로 분류된다. 인삼은 수입규정B01 외에 수입규정502도 준수해야 하며 인삼은 중약재이므로 중약과 약상(药商)에 관한 수입규정도 따라야 한다. 또한, 한국 수입 인삼은 특별구정(첨부자료13)도 준수해야 하고 한국정부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 하며 운송 포장규정에도 부합해야 식품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2 가공식품별 수입 요건

- 대만의 가공식품 수입 품목은 많으며 각 항구에는 가공식품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수입 농산품과 달리 한국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제한은 많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와 행정원 농위회의 수입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종류가 많으므로 품목이 비슷할 경우 품목의 차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CCC코드를 잘못 판단하여 수입, 판매 시간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초콜릿은 18063200006 “기타 초콜릿 제품(덩어리형, 바형(bar type) 또는 막대형, 중량은 2킬로 미만, 기타 재료 없음)”일 수 있지만 만약 주된 재료가 과자(예를 들어 초콜릿과자)일 경우 이는 19053100007 “단 과자”로 분류된다. 두 품목 모두 수입규정F01을 따라야 한다.
- 본 장에서는 김치, 유자차, 주스(사과주스를 예로 함), 음료, 고추장, 초콜릿, 빵, 주류, 과자, 라면(즉석 라면), 조제분유와 조미유, 말린 버섯, 밤과 대추를 예로 설명하였다.

1) 김치, 유자차

표 3-8. 김치, 유자차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20059910	00	1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으로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양배추, 냉동되지 않음, 제2006호 의 물품 제외	Sauerkraut,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not frozen,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20.06	KGM	25%	10%(GT) 13.3%(HN) 7.5%(NI) 18.8%(NZ) 0%(PA) 22.5%(SG) 13.3%(SV)	50%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9/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9/01/01 종료일자 : 9999/99/99
20083000	00	2	달리 조제되거나 보존된 감귤류 과실	Citrus fruit,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KGM	26%	10.4%(GT) 13.8%(HN) 13.8%(NI) 19.5%(NZ) 0%(PA) 23.4%(SG) 13.8%(SV)	50%		F01 MP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95/05/01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한국 수입 김치는 수입규정F01과 MW0를 준수해야 하는데, MW0는 중국수입 금지품목이므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F01은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가 주관하는 수입규정이며 수입상품은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 자료8)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유자차는 특정 코드가 없으므로 대만 세관은 이를 “달리 조제되거나 보존된 감귤류 과실”로 분류했다. 유자차가 준수해야 할 수입 규정은 F01과 MP1이며, 마찬가지로 F01은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가 주관하는 수입규정이며 MP1은 중국 물품 조건부 허가 수입에 관한 규정이므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2) 주스(예- 사과주스), 음료, 주류

표 3-9. 사과주스, 음료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CCC Code		검 사 코 드 C 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22029026	00	3	미발효 사과주스	Apple juice drink, unfermented, soft	KGM	20%	8%(GT) 10.6%(HN) 10.6%(NI) 15%(NZ) 0%(PA) 18%(SG) 10.6%(SV)	50%	T	F0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11/08/01 종료일자 : 9999/99/99
22029016	00	5	미발효 희석 천연 사과주스	Apple juice drink, unfermented	KGM	20%	8%(GT) 10.6%(HN) 10.6%(NI) 15%(NZ) 0%(PA) 18%(SG) 10.6%(SV)	50%	T	F0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11/08/01 종료일자 : 9999/99/99
22029090	99	6	설탕, 감미료 또는 향료가 첨가된 기타 음료수. (유제품 불포함), 무알코올	Other wate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not containing dairy products), non-alcoholic	KGM	10%	1%(GT) 3%(HN) 3%(NI) 7.5%(NZ) 0%(PA) 9%(SG) 3%(SV)	12.5%	T	F0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11/08/01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수입 주스에서 사과주스를 예로 들면, 이는 “미발효 사과주스”와 “미발효 희석 천연 사과주스”로 분류되고 두 품목명은 모두 “사과주스”지만 이의 내용물과 세관 신고 시 제공하는 문서에 근거하여 어느 코드인지를 판정한다. 이러한 품목들은 수입할 때 정확한 코드를 기입하지 않아 식품 수입 절차가 길어져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입 음료는 종류가 많고 “미발효 감귤음료”, “미발효 자

몽음료” 등 여러 제품명이 있으므로 품목코드 분류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에서는 “설탕, 감미료 또는 향료가 첨가된 기타 음료수. (유제품 불포함), 무알코올”인 제품 품목명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음료마다 다른 코드로 분류하지만 포장과 표시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중국어 표시 부분은 간혹 한국어에서 번역을 잘못하면 표시가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기 표에서 제시된 물품은 모두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가 제정한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을 준수해야 수입규정F01에 부합한다.

표 3-10. 주류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CCC Code		검사 코드 C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금징수 규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계코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22030000	00	1	맥아로 제조된 맥주	Beer made from malt	LTR KGM	0%	0%(GT) 0%(HN) 0%(NI) 0%(NZ) 0%(PA) 0%(SG) 0%(SV)	50%	B	463 W01		관세 시행일자: 2006/07/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3/09/17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6/07/01 종료일자 : 9999/99/99
22041010	00	6	샴페인	Champagne	LTR KGM	20%	0%(GT) 0%(HN) 0%(NI) 0%(NZ) 0%(PA) 0%(SG) 0%(SV)	50%	B	463 W01		관세 시행일자: 2006/07/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3/09/17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6/07/01 종료일자 : 9999/99/99
22060030	00	2	미드	Mead	LTR KGM	20%	2%(GT) 6%(HN) 10.6%(NI) 0%(NZ) 0%(PA) 18%(SG) 6%(SV)	50%	B	463 MW0 W01		관세 시행일자: 2006/07/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3/09/17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6/07/01 종료일자 : 9999/99/99

C.C.C코드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22082090	00	3	기타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Other spirits obtained by distilling grape wine or grape marc	LTRK GM	0%	0%(GT) 0%(HN) 0%(NI) 0%(NZ) 0%(PA) 0%(SG) 0%(SV)	50%	B	463 MW0 W01		관세 시행일자: 2006/07/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3/09/17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6/07/01 종료일자 : 9999/99/99
22089060	00	4	곡류 증류주 (K o r n)	Korn	LTR KGM	0%	0%(GT) 0%(HN) 0%(NI) 0%(NZ) 0%(PA) 0%(SG) 0%(SV)	50%	B	463 MW0 W01		관세 시행일자: 2006/07/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3/09/17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6/07/01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대만 수입 주류는 종류가 많음으로 여기서는 “맥아로 제조된 맥주”, “삼페인”, “미드”, “기타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와 “곡류 증류주”를 예로 들었다.
- 상기 주류는 모두 수입규정463에 부합해야 하므로 수입업체는 재정부에서 발급 받은 담배·주류 수입업 허가증 사본이나 재정부의 허가 문서를 제출해야 판매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규정은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주류 수입 시, 규정W01을 준수해야 할 수입업체는 재정부와 위생복지부가 공포한 “수입주류 검사규정”(첨부자료14)에 따라 재정부에 수입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주류가 수입 규정W01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관신고 시 화물 수입 코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다.

3) 고추장, 빵, 과자, 라면(즉석 라면)

표 3-11. 고추장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21039090	90	5	제2103호의 기타제품	Other articles of heading 2103	KGM	12%	1.3%(GT) 3.7%(HN) 4.1%(NI) 9%(NZ) 0%(PA) 9.6%(SG) 3.7%(SV)	25%		F01		관세 시행일자: 2007/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2/01/01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수입 고추장, 간장과 기타 장류는 모두 코드21039090905에 속한다. 수입 고추장은 규정F01을 준수해야 하므로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를 따라야 한다. 또한, 고추와 고추장의 코드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고추장의 코드는 21039090905이고 고추의 코드는 07096000001이며 고추는 수입규정F01뿐만 아니라 수입규정B01도 준수해야 한다. 즉, 고추는 행정원 농위회가 규정한 문서를 제시해야 식품수입허가증이 발급된다.

표 3-12. 빵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 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19051000	00	2	귀리빵	Crispbread	KGM	10%	10%(GT) 10%(HN) 10%(NI) 7.5%(NZ)	30%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C.C.C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 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10%(PA) 8%(SG) 10%(SV)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1/01 종료일자 : 9999/99/99
19054000	10	4	고기를 포함하는 러스크, 토스트된 식빵 및 이와 유사한 토스트된 물품	Rusks, toasted bread and similar toasted products, containing meat	KGM	20%	2%(GT) 6%(HN) 20%(NI) 15%(NZ) 20%(PA) 18%(SG) 6%(SV)	35%		B01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3/06/01 종료일자 : 9999/99/99
19054000	20	2	고기를 포함하지 못하는 러스크, 토스트된 식빵 및 이와 유사한 토스트된 물품	Rusks, toasted bread and similar toasted products, not containing meat	KGM	20%	2%(GT) 6%(HN) 20%(NI) 15%(NZ) 20%(PA) 18%(SG) 6%(SV)	35%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3/06/01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수입 빵은 빵 자체의 성분에 따라 분류된다. 여기서는 “귀리빵”, “고기를 포함하는 러스크, 토스트된 식빵 및 이와 유사한 토스트된 물품”와 “고기를 포함하지 못하는 러스크, 토스트된 식빵 및 이와 유사한 토스트된 물품”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세 가지 빵은 모두 수입규정F01에 부합해야 하고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고기를 포함하는 러스크, 토스트된 식빵 및 이와 유사한 토스트된 물품”은 육류가 첨가되므로 수입규정B01에도 부합해야 한다. 즉, 해당 품목 수입 시,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이 공포한 “검역을 거쳐야 할 동식물 품목표”(첨부자료9)와 관련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식품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표 3-13. 과자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19053100	00	7	단 과자	Sweet biscuits	KGM	25%	2,5%(GT) 7,5%(HN) 0%(NI) 21,9%(NZ) 25%(PA) 22,5%(SG) 7,5%(SV)	40%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3/12/19 종료일자 : 9999/99/99
19052000	00	0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Gingerbre ad and the like	KGM	21%	21%(GT) 21%(HN) 21%(NI) 18,4%(NZ) 21%(PA) 18,9%(SG) 21%(SV)	30%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1/01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외국에서 과자 수입 시, 원료의 성분을 알아야 정확한 CCC코드를 기입할 수 있다.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 과자”와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모두 수입규정F01과 MW0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중 MW0는 중국수입 금지물품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수입규정F01는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을 준수하여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과자 종류 중 영유아용 과자와 환자용 과자가 있고, 두 품목은 대응되는 코드가 있지만, 한국은 대만에 이러한 상품을 수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표 3-14. 즉석 라면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19023010	20	5	고기첨가 된 즉석 라면	Instant noodles, not containing meat	KGM	20%	2.2%(GT) 6.3%(HN) 11.7%(NI) 15%(NZ) 0%(PA) 18%(SG) 6.3%(SV)	35%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7/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3/06/01 종료일자 : 9999/99/99
19023010	10	7	고기첨가 되지 않은 즉석 라면	Instant noodles, containing meat	KGM	20%	2.2%(GT) 6.3%(HN) 11.7%(NI) 15%(NZ) 0%(PA) 18%(SG) 6.3%(SV)	35%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7/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4/07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3/06/01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대만의 라면 수입규정에 의하면 “고기첨가 된 즉석 라면” 또는 “고기첨가 되지 않은 즉석 라면” 모두 F01과 MW0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규정 MW0는 중국 수입 금지 물품이므로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F01은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가 주관하는 수입규정이며 수입상품은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을 따라야 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4) 조미유, 조제분유

표 3-15. 조미유, 조제분유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19011000	10	4	소매용 영아분유 (성장기용 분유 포함) 와 영아우유.	Milk powder for infant use (incl follow up formula), milk for infant use, put up for retail sale	KGM	5%	0%(GT) 0%(HN) 0%(NI) 0%(NZ) 0%(PA) 0%(SG) 0%(SV)	7.5%		501 F0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2/01/01 종료일자 : 9999/99/99
19019021	00	4	소매용 조제분유(5 lbs 또는 5 lbs 미만 포장)	Prepared milk powder, milk food canned or packaged 5 lbs and under for retail	KGM	12%	1.2%(GT) 3.6%(HN) 3.6%(NI) 0%(NZ) 0%(PA) 9.6%(SG) 3.6%(SV)	15%		F0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9/12 종료일자 : 9999/99/99
19019022	00	3	기타 조제분유	Other milk powder, prepared	KGM	12%	1.2%(GT) 3.6%(HN) 3.6%(NI) 0%(NZ) 0%(PA) 0%(SG) 3.6%(SV)	15%		F0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9/12 종료일자 : 9999/99/99
19019027	00	8	조미유	Flavoured milk	KGM	NT\$15. 6/KGM		NT\$18.4 /KGM	G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2/01/01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외국수입 조제분유와 조미유는 “소매용 영아분유(성장기용 분유 포함)와 영아우유”, “소매용 조제분유(5lbs 또는 5lbs 미만 포장)”, “기타 조제분유”와 “조미유”로 분류할 수 있다. 상기 4가지 물품은 모두 수입규정F01을 준수해야 하므로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소매용 영아분유(성장기용 분유 포함)와 영아우유”은 수입규정501도 준수하고 위생복지부의 승인문서도 첨부해야 식품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분유에서 멜라민 성분이 밝혀진 사건으로 최근 몇 년 대만 조제분유의 검사는 더 엄격해졌다.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입하기 전에 관련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5) 말린 버섯, 밤, 대추

표 3-16. 말린 버섯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 품 명	Description of Goods	단 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 력 발 생 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07123920	00	0	건조된 버섯	Shiitake (Lentinus edodes) , dried	KGM	NT\$369 /KGM	NT\$369/KGM(GT) NT\$369/KGM(HN) NT\$369/KGM(NI) NT\$322.8/KGM(NZ) NT\$369/KGM(PA) NT\$369/KGM(SG) NT\$369/KGM(SV)	NT\$434 /KGM	G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3/12/19 종료일자 : 9999/99/99
07095910	00	2	신선 또는 냉장 버섯	Shiitake (Lentinus edodes), fresh or chilled	KGM	20%	9.1%(GT) 11.4%(HN) 12.8%(NI) 17.5%(NZ) 0%(PA) 18%(SG) 11.4%(SV)	50%		B01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07/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03/12/19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외국에서 버섯 수입 시, 제품명이 “건조된 버섯” 또는 “신선 또는 냉장 버섯”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기 두 품목은 다른 코드로 분류되는데 “말린버섯”의 코드는 07123920이므로 수입규정F01을 준수해야 한다. 즉,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한다. “신선 또는 냉장 버섯”의 코드는 07095910이므로 수입규정F01 외에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에서 공포한 “검역을 거쳐야 할 동식물 품목표”(첨부자료9)와 관련 검역 규정도 따라야 식품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표 3-17. 밤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 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 품 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08024110	00	9	신선한 밤, 탈 피 안 함	Fresh chestnuts, in shell	KGM	NT\$5.8/K GM 또는 16% 중 높은 세액 적용	NT\$2.3/KGM 또는 6.4%(GT) NT\$3/KGM또는8.5%(HN) NT\$1.7/KGM또는4.8%(NI) 0%(NZ) 0%(PA) 0%(SG) NT\$3/KGM또는8.5%(SV)	NT\$9/KG M 또는 25% 중 높은 세액 적용		B01 F01		관세 시행일자: 2013/11/29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13/11/29 종료일자 : 9999/99/99
08024210	00	8	신선산 밤, 탈 피함	Fresh chestnuts, shelled	KGM	NT\$5.8/K GM 또는 16% 중 높은 세액 적용	NT\$2.3/KGM 또는 6.4%(GT) NT\$3/KGM또는8.5%(HN) NT\$1.7/KGM또는4.8%(NI) 0%(NZ) 0%(PA) 0%(SG) NT\$3/KGM또는8.5%(SV)	NT\$9/KG M 또는 25% 중 높은 세액 적용		B01 F01		관세 시행일자: 2013/11/29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13/11/29 종료일자 : 9999/99/99
08024120	00	7	건조된 밤, 탈 피 안 함	Dried chestnuts, in shell	KGM	NT\$10.2/ KGM 또는 16% 중 높은 세액 적용	NT\$4/KGM 또는 6.4%(GT) NT\$5.4/KGM또는8.5%(HN) NT\$3/KGM또는4.8%(NI) 0%(NZ) 0%(PA) 0%(SG) NT\$5.4/KGM또는8.5%(SV)	NT\$16/KG M 또는 25% 중 높은 세액 적용		B01 F01		관세 시행일자: 2013/11/29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13/11/29 종료일자 : 9999/99/99

C.C.C코드 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 품 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c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08024220	00	6	건조된 밤, 탈 피함	Dried chestnuts, shelled	KGM	NT\$10.2/ KGM 또는 16% 중 높은 세액 적용	NT\$4/KGM 또는 6.4%(GT) NT\$5.4/KGM또는8.5%(HN) NT\$3/KGM또는4.8%(NI) 0%(NZ) 0%(PA) 0%(SG) NT\$5.4/KGM또는8.5%(SV)	NT\$16/KG M 또는 25% 중 높은 세액 적용		B01 F01		관세 시행일자: 2013/11/29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13/11/29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외국에서 밤 수입 시, 신선한 밤, 건조된 밤, 탈피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수입규정F01과 B01을 준수하여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 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하고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에서 공포한 “검역을 거쳐야 할 동식물 품목표”(첨부자료9)와 관련 검역 규정을 따라야 식품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표 3-18. 대추 수입코드 및 규정

C.C.C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 품 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08041010	00	4	건조된 빨간 대추 (중약용 포함)	Red dates, dried, (incl. for Chinese drugs)	KGM	27%	0%(GT) 0%(HN) 0%(NI) 0%(NZ) 0%(PA) 24.3%(SG) 0%(SV)	40%		513 F02 H02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9/12 종료일자 : 9999/99/99

C.C.C코드 CCC Code		검 사 코 드 CD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단위 Unit	관세율 Tariff Rate			세 금 징 수 규 정 CR	수출입규정 Imp.& Exp.Regulations		효력발생일 Valid Date
관세코드 Tariff_NO	통 계 코 드 SC					칼럼1 Column I	칼럼2 Column II	칼럼3 Column III		수입 Import	수출 Export	
08041020	00	2	건조된 흑대추	Black dates, dried	KGM	27%	0%(GT) 0%(HN) 0%(NI) 0%(NZ) 0%(PA) 24.3%(SG) 0%(SV)	40%		F01		관세 시행일자: 2004/01/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1989/09/12 종료일자 : 9999/99/99
08041090	10	5	신선한 밀조(蜜枣)	Jujube, fresh	KGM	27%	10.8%(GT) 14.4%(HN) 8.1%(NI) 20.3%(NZ) 0%(PA) 24.3%(SG) 14.4%(SV)	45%		B01 F01 MW0		관세 시행일자: 2010/12/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10/12/01 종료일자 : 9999/99/99
08041090	90	8	기타 신선한 또는 건조된 대추	Other dates, fresh or dried	KGM	27%	10.8%(GT) 14.4%(HN) 8.1%(NI) 20.3%(NZ) 0%(PA) 24.3%(SG) 14.4%(SV)	45%		B01 F01 MP1		관세 시행일자: 2010/12/01 수입규정 효력발생일: 2014/02/10 수출규정 효력발생일: 2010/12/01 종료일자 : 9999/99/99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외국 수입 대추의 종류는 많은데 대체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건조된 빨간 대추(중약용 포함)”는 수입규정513을 준수해야 하고, 수입 중약재일 경우 502규정을 따라야 하며 중약용이 아닌 경우 502규정을 따르지 않고 “비중약용”인 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상기 규정 외에 수입규정F02도 준수해야 한다. 즉, 상품이 식품 또는 식품이 포함될 경우,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을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건조된 빨간 대추에 중약재 성분이 있으면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가 발급한 수입허가증으로 수입통보를 해야 수입규정H02에 부합한다. “건조된 흑대추” 수

입 시, 수입규정F01을 준수해야 하고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첨부자료8)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선한 밀조(蜜枣)”와 “기타 신선한 또는 건조된 대추”는 수입규정F01 외에 수입규정B01에 따라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에서 공포한 “검역을 거쳐야 할 동식물 품목표”(첨부자료9)와 관련 검역 규정을 따라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식품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

3 유전자재조합식품 수입 현황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첨부자료1)의 수정에 따라 특정 식품의 검사 절차도 변경되었고 주요 관심사였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관한 수정안도 마련되었다. 대만에서는 유전자재조합가공식품을 “대두와 옥수수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전자재조합 작물은 대만에서의 판매만 허락하고 상업적 재배는 허락하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이 매년 수입한 대량의 옥수수와 대두 중 유전자재조합 작물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농위회의 통계에 의하면, 대만이 수입한 대두의 90%는 유전자재조합 작물이고 수입 옥수수도 거의 80%가 유전자재조합 작물이며,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대만의 수요량은 매우 많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첨부자료1)이 수정된 후, 대만 정부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자의회(諮議會) 학자와 전문가의 건의를 채택하여 기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리스크를 평가한 뒤 2014년 7월 29일에 5개 항목의 유전자재조합 옥수수와 대두 화물 분류 코드 및 수출규정을 삭제하고 12개 항목을 추가하여 공포했다.

표 3-19. 중화민국 수출입 물품 분류표 수정항목

중화민국 수출입 품목 분류표 수정항목				
물품코드	제품명	수정 결과	원래 수입규정	변경된 수입규정
1005.90.00.90-5	기타 옥수수 Other maize (corn)	삭제	B01 F01	
1005.90.00.91-4	기타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Other genetically modified maize (corn)	추가		B01 F01
1105.90.00.92-3	기타 비유전자재조합 옥수수 Other non-genetically modified maize (corn)	추가		B01 F01
1102.20.00.00-1	옥수수분말 Maize (corn) flour	삭제	404 F02	
1102.20.00.10-9	유전자재조합 옥수수분말 Genetically modified maize (corn) flour	추가		404 F02
1102.20.00.20-7	비유전자재조합 옥수수분말 Non-genetically modified maize (corn) flour	추가		404 F02
1103.13.00.00-9	탈피한 옥수수 분쇄물과 조분 Groats and meal of corn (maize)	삭제	F01 MW0	
1103.13.00.10-7	탈피한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분쇄물과 조분 Groats and meal of genetically modified corn (maize)	추가		F01 MW0
1103.13.00.20-5	탈피한 비유전자재조합 옥수수 분쇄물과 조분 Groats and meal of non-genetically modified corn (maize)	추가		F01 MW0
1104.23.00.00-6	기타 가공된 옥수수 Other worked maize (corn)	삭제	F01 MW0	
1104.23.00.10-4	기타 가공된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Other worked genetically modified maize (corn)	추가		F01 MW0
1104.23.00.20-2	기타 가공된 비유전자재조합 옥수수 Other worked non-genetically modified	추가		F01 MW0
1201.90.00.90-7	기타 대두, 부수어졌는지 무관 Other soybeans, whether or not broken	삭제	B01 F01	
1201.90.00.91-6	기타 유전자재조합 대두, 부수어졌는지 무관 Other genetically modified soybeans, whether or not broken	추가		B01 F01

중화민국 수출입 품목 분류표 수정항목				
물품코드	제품명	수정 결과	원래 수입규정	변경된 수입규정
1201.90.00.92-5	기타 비유전자재조합 대두, 부수어졌는지 무관 Other non-genetically modified soybeans, whether or not broken	추가		B01 F01
1208.10.00.00-6	대두분과 조분 Flours and meals of soya beans	삭제	F01 MW0	
1208.10.00.10-4	유전자재조합 대두분과 조분 Flours and meals of genetically modified soya beans	추가		F01 MW0
1208.10.00.20-2	비 유전자재조합 대두분과 조분 Flours and meals of non-genetically modified soya beans	추가		F01 MW0

자료출처: 중화민국 재정부 관무서,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aT기획조사 2014 - 대만 편

대만 최신 식품위생규정과 한국식품 수입요건

CHAPTER

4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수입시 주의사항

01. 식품표시 규정

02. 식품첨가물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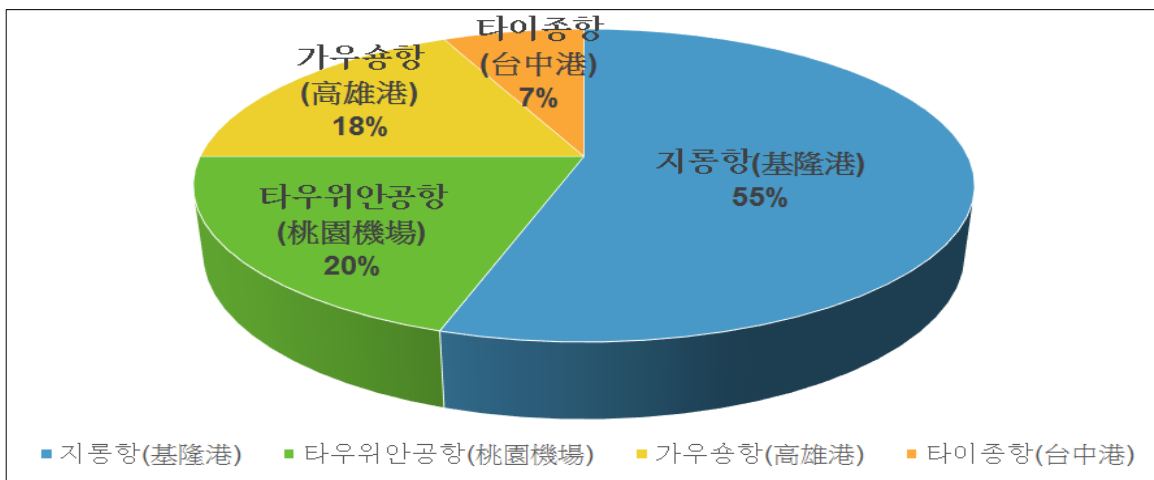
03. 잔류농약 규정

04. 유전자재조합식품 규정

05. GMP, GHP, CNS 인증제도

- 식품의 관리와 통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첨부자료1)과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 검사 규정(첨부자료8)에 따라 진행하며 최근 통계를 보면, 지룽항(基隆港) 검사실은 55%인 검사횟수 비율로 가장 많이 검사를 진행했고 다음으로는 20%인 타우위안(桃園)공항 검사실, 18%인 가우송항(高雄港)과 7%인 타이중항(台中港) 검사실이다.

그림 4-1. 각 공항 및 항구 검사실 검사 비율



자료출처: 중화민국 위생복지부, 상업발전연구원 정리

- 어느 항구에서 식품을 수입하든,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모두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식품표시 규정

- 대만에 수출된 식품의 표시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인은 주로 중국어 라벨링표시에서 불합격되었기 때문인데, 주로 중국어 표시가 없거나,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거나, 영양성분 표시 또는 영양성분 주장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분표시가 원문과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나타났다.

- 2014년 2월 5일 대통령령(總統令)으로 수정, 공포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첨부자료1)에서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수정되었으며, 라벨표시가 부실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을 4~20만 TWD에서 4~400만 TWD로 올렸다. 이처럼 표시에 대한 규정은 더 엄격해졌다.
- 아래는 식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다.

1) 식품명

- 식품명은 품질과 일치해야 하고 시중에서 식품 판매 시, 중화민국 국가기준(CNS)에서 정한 명칭을 참고, 사용해야 한다. 판매용의 신선한 농, 축, 수산물은 그의 식품분류명 또는 통용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공포한 “식품명 표시규정 정리”(첨부자료15)를 참고할 수 있다.
- 수입업체는 제품명이 제품 본질과 일치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포도주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내용물에 포도가 없으면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2) 내용물 명칭

- 식품에 사용된 내용물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표시해야 한다. 또한, 2가지 이상 원료로 제조된 화합물 (즉, 복합원료) 도 그 성분들을 표시해야 한다. 본 규정은 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법규에 명시될 예정이다.

그림 4-2. 커피 표시 예시

제품명	한국 소녀시대 커피
성분	커피가루, 포름(경화 팜유, 카세인,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구연산나트륨), 설탕
실중량	15g ± 3%
유통기한	2015.10.1
수입업체	커웨이안 식품회사(可瑞安食品公司) 타이베이시 xx구 xx로 xx호(台北市xx區xx路xx號)
전화	(02)87654321
주의사항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위 커피 표시에서 프림은 2가지 이상 성분으로 제조된 혼합물, 즉 복합원료인데 이는 내용물을 함량이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표시했으므로 기준에 부합한다. 대만에서의 식용 가능 원료 명칭은 위생복지부에서 공포한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표”(첨부자료16)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수입업체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내용물의 원료표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할 때 중국어로 번역된 식품 내용물의 명칭이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 수출업체는 대만으로 수출할 때 이에 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실중량, 용량 또는 수량

- 대만은 제품마다 특성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액체와 고형물의 혼합물인 경우 내용량과 고형량을 따로 국제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그림 4-3. 중량 표시 예시

제품명	오뚜기 캔
성분	참치, 고추장, 백설탕, 마늘, 물, 양파, 감자, 대두유, 식용 파프리카 추출색소
중량	150g
고형량	113g
유통기한	2015.10.1
수입업체	커웨이안 식품회사(可瑞安食品公司) 타이베이시 xx구 xx로 xx호(台北市xx區xx路xx號)
전화	(02) 87654321
주의사항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위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캔 포장에는 실중량 150g, 고형량 113g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중량의 부족량 허용오차는 CNS 12924호 포장식품 실중량 검사법과 CNS 974호 식품캔 검사법을 참고할 수 있다.

4) 식품첨가물 명칭

- 2가지 이상 원료를 혼합한 식품첨가물은 “용도”를 제시해야하며 명명할 때에는 첨가물 명칭들을 명시해야 하며 용도만은 표시할 수 없다. 원래 식품안전관리법 시행세칙에서는 “조미제(감미제, 카페인 불포함), 유화제, 팽창제, 효소, 두부 응고제, 광택제일 경우, 용도를 제시함으로써 명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2014년 6월 19일부터 제조된 제품(제조날짜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첨부자료1) 수정 후, 식품 중의 향료성분은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연향료는 “천연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원료들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이 감미제, 방부제, 향산화제일 경우, 그의 용도를 제시하는 명칭과 함께 제품명 또는 통용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그림 4-4. 식품첨가물 명칭 예시

제품명	구아바 주스
성분	물, 농축 구아바 주스, 소금, 설탕, 품질개량제(염화칼슘, 수산화칼슘), 감미제(D-소르비톨)
실중량	120g
유통기한	2015.10.1
수입업체	커웨이안 식품회사(可瑞安食品公司) 타이베이시 xx구 xx로 xx호(台北市xx區xx路xx號)
전화	(02) 87654321
주의사항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위와 같이 구아바주스에 들어가는 성분인 감미제는 그의 용도명칭뿐만 아니라 그의 제품명도 표시해야 한다.
- 또한, 식품에 첨가된 식품첨가물이 합법적인 원료에 첨가돼서 사용된 것이고 해당 식품첨가물의 함량이 제품 내 기타 식품첨가물보다 현저하게 적고 제품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시행세칙(첨부자료17)에 추가될 예정이다.

5) 제조업체 또는 대만업체 이름, 전화번호와 주소

- 제품에 대만업체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가 제대로 명시되었으면 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제조업체의 정보 표시를 강제 요구하지 않는다. 외국수입 식품은 대만 책임 업체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시행세칙(첨부자료17)에 추가될 예정이다.

6) 원산지(국가)

- 중국어로 표시된 식품제조업체의 주소가 원산지 (국가) 를 나타낼 수 있으면 따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7) 유통기한

-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시, 통상적인 표시 방식으로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예 : 2015.11.21, 2015/05/09, 12/14/2015(월/일/년). 식품의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식품의 유통기한은 년과 월만 표시하면 되고 당월 말일을 유효기간 마지막 날로 표시할 수 있다.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공포한 “시판 포장 식품 유통기한 평가 안내”(첨부자료18)를 참고할 수 있다.

8) 영양성분 표시

- 2015년 7월 1일부터 “당류”, 1~3살과 임산부의 하루 영양성분 섭취량 기준치, 칼로리 계산과 허용오차범위 등이 강제표시 항목으로 추가된다. 일반 포장식품은 “포장식품 영양성분 표시의 준수사항”(첨부자료19)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림 4-5. 식품 영양성분 표시 수정

영양분 표시 수정 내용 (2015년 7월1일부터 실시)			새 영양표시에 “당류” 함량 추가 영양성분 표시는 아래 2가지 양식으로 줄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당류”의 함량을 강제 표시 항목으로 추가 ☐ 트랜스지방의 정의 추가, 이를 “0”으로 표시해야 함 ☐ 식이섬유의 정의 추가 ☐ 하루 칼로리와 각 영양성분의 참고 섭취량 수정 ☐ 데이터의 수정 및 정리방식 추가, 수정					
영양성분 주장이 없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포장식품					
☐ 음용수, 광천수, 얼음 ☐ 기타 성분 또는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과일, 채소, 가축, 가금, 난제품 과 수산물 ☐ 기타 성분 또는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타 마시는 차잎, 커피, 허브 등 ☐ 직접 식용하지 않는 조미 향신료, 조미소스 ☐ 향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조미 향신료 ☐ 소금과 소금 대체품 ☐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지 않는 식품원료					
영양성분			영양성분		
1회 제공량 g(ml) 총 ~회 제공량			1회 제공량 g(ml) 총 ~회 제공량		
	1회 제공량 당	100g 당 (100ml 당)		1회 제공량 당	하루 참고 비율
칼로리	kcal	kcal	칼로리	kcal	%
단백질	g	g	단백질	g	%
지방	g	g	지방	g	%
포화지방	g	g	포화지방	g	%
트랜스지방	g	g	트랜스지방	g	%
탄수화물	g	g	탄수화물	g	%
당	g	g	당	g	%
나트륨	mg	mg	나트륨	mg	%
기타 영양소 합량			기타 영양소 합량		

- 2014년 4월 15일에 수정 공포된 바에 따라 “당류”의 함량 표시가 강제 표시 항목으로 추가되고, 트랜스지방의 정의가 수정되고 이를 “0”으로 표시해야 하며, 식이섬유의 정의도 추가되고, 영양성분 표시 양식이 2가지로 줄이고, 하루 칼로리와 각 영양성분의 참고 섭취량이 수정되며 데이터의 수정 및 정리방식이 추가, 수정되었다. 영양성분 명시가 없는 포장식품은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음용수, 광천수, 얼음, 기타 성분 또는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과일, 채소, 가축, 가금, 난제품과 수산물 등의 식품). 또한, 즉석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학자와 전문가 자의회의(諮議會議)에서 논의하고 리스크를 평가할 예정이다.
- 또한, 시판 포장식품이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은유적 또는 암시하는 등 방식 포함) 해당 식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표현하고자 할 경우(예: 풍부한 비타민 A, 고칼슘, 저나트륨, 무콜레스테롤, 고식이섬유 등), 영양성분 명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표 4-1. 영양성분 명시에 대한 설명

“적당량 섭취 권장”의 영양 성분 명시	칼로리,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과 당류
“~ 보충”의 영양 성분 명시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C, 비타민E, 칼슘, 철분

- 모든 성분이 영양 성분 명시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 표에서 제시한 영양성분만 영양 성분 명시 표시할 수 있으며 아래 표에서 제시한 형용사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표 4-2. 영양성분 명시에 사용되는 형용사

적당량 섭취 권장	“무(无)”, “미포함” 또는 “0” “저(低)”, “소(少)”, 또는 “소량” “~보다 낮다” 또는 “~보다 적다”
~ 보충	“고(高)”, “다(多)”, “강화” 또는 “풍부” “영양원”, “공급” 또는 “함유” “~보다 높음” 또는 “~보다 많음”

9) 유전자재조합 식품원료 첨가, 중앙 주관기관으로부터 공포함

- 현행 위생복지부에서 공포한 “검사, 등록이 필요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유전자재조합 원료”는 대두와 옥수수 2가지밖에 없다. 기타 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표시해서도 안 된다. 추후 식품안전위생관리법(첨부자료1)은 2014년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원료가 첨가된 포장식품, 식품첨가물과 날개 포장식품의 표시규정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림 4-6. 유전자재조합 원재료 표시 중점사항

유전자재조합 원재료 표시 중점

유전자 재조합 대두나 옥수수가 원료이고 **그의 중량이 최종 제품 총 중량의 5%를 초과하면**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 원료 포함” 표시를 해야 한다.

유전자 재조합 대두나 옥수수가 아니지만 수확, 보관, 운반 또는 기타 이유로 유전자재조합 대두나 옥수수가 5% 미만 섞게 되는 것과 같은 비의도적 첨가 식품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유전자 재조합 대두나 옥수수로 제조한 간장, 대두기름 (콩기름), 옥수수오일, 옥수수시럽, 옥수수전분 등은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 원료 포함” 표시를 안 해도 한다.

표시범례

제품명	XX과자
주요성분	밀가루, 대두가루 (유전자재조합) , 귀리, 버터, 효모, 소금, 식물성 오일
내용량	200g±5%
보관방식	서늘한 곳에 보관
유통기한	2014.12.31
제조업체	XX식품유한회사

品名:海太江米糕	
成分:麵粉,糯米粉,棕櫚油,葵花油,玉米糖漿,花生,雞蛋白蛋白,牛奶,酵母,脫脂奶粉,起酥油,雞蛋黃液,糖漿,檸檬酸	
淨重:85公克	
賞效日期:如包裝所示(西元年/月/日)	
進口商:瑞安食品有限公司	
地址:台北市大安區瑞安街67號之1	
電話:(02)27079553	
產地:韓國	
營養標示	
每一份量85公克 每包共裝1份	
	每份
熱量	430 大卡
蛋白質	7 公克
脂肪	21 公克
碳水化合物	48 公克
纖維	0 公克
鹽	0.5 公克
糖	55 公克
#603419	

- 유전자재조합 원료 표시의 중점사항은 제품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규정에 부합하고 공급 가공한 대두와 옥수수 제품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자에 첨가된 대두가루는 대두의 중량이 총비율의 5%를 초과하므로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5% 미만인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첨가한 제품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콩기름, 옥수수유와 옥수수시럽 등과 같은 고급 가공식품에는 유전자 조각이나 단백질이 없으므로 유전자재조합 식품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태 맛동산의 성분에는 옥수수시럽이 있지만 “유전자재조합” 표시는 안 해도 된다.

10) 기타 중앙 주관기관으로부터 공포된 사항

- 포장에 카페인 함량 표시, 채식 명시, 진공 포장식품, 포장 채식라면, 포장 식용유, 포장 저나트륨 소금, 소고기와 식용 가능한 소 부위가 원료로 첨가된 용기 또는 포장 식품의 원산지, 과채즙이 첨가됐다고 명시된 시판 포장음료, 시판 포장 미핀스(米粉丝, 대만 쌀국수) 제품, 신선유, 장기보존유, 조미유, 우유음료 및 분유의 제품명과 식품 알레르겐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중앙 주관기관으로부터 공포한 후 시행한다.

- 현재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3종류 제품 규정의 우선시행을 공포하였다. 3종류의 식품은 주성분이 차지하는 양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며 본 규정은 2014년 7월 1일(제조날짜 기준)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판 포장 미편스(米粉絲, 대만 쌀국수)제품 표시 규정(첨부자료20)

본 규정이 추가된 후부터:

- ① 100% 쌀로 제조된 제품만 “xx피편(米粉)”, “xx순미편(純米粉)”으로 명명할 수 있다. 쌀 함량이 100% 미만이지만 원산지나 제조지를 자랑하는 제품명이 현지에서 사용해온 역사가 있으면(예: 신주미편(新竹米粉), 푸리미편(埔里米粉), 편위안미편(芬園米粉), 시뤄미천(西螺米粉) 등) 예외로 “xx미편”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명도 역시 “시판 포장 미편스 제품 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쌀함량이 50% 이상 100% 미만인 제품은 “xx조합미편”으로 명명해야 한다.
- ③ 50% 미만인 제품은 순미편, 미편 또는 조합미편으로 명명할 수 없고 다른 제품의 본질과 일치하게 명명해야 한다.
- ④ 본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또는 28조를 위반하게 되어, 동법 제47조 제1항 제7관, 제45조 제1항 또는 제52조 제1항 제3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2) 신선유·장기보존유·조미유·우유음료와 분유 제품명과 표시 규정(첨부자료21)

본 규정 개정으로 :

- 가) 많은 유제품의 정의가 명확해졌다. 예: 신선유, 장기보존유는 생유(生乳)를 원료로 한 생유 함량이 100%인 제품이고, 조미유는 50% 이상의 생유, 신선유 또는 장기보존유를 주원료로 향미 등을 첨가해서 가공, 제조된 제품이며 장기보존 조미유는 조미유를 고압살균 또는 고온살균하고 무균포장한 후 음용으로 제공하는 유즙, 혹은 병(캔) 포장 조미유를 고압멸균 또는 고온살균한 후 음용으로 제공하는 유즙 등을 가리킨다. 또한, 각종 유제품의 제품명 표시에 대한 규정도 보완하였다.

나) 많은 성분에 관한 의문이 해결되었다. 예를 들어 즉석 분유제품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대두 레시틴을 유화제로 첨가할 경우, 대두 레시틴의 함량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으면 해당 제품은 분유제품으로 간주한다. “신선유”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강화 신선유”는 “생유에 함유된 영양소를 첨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올리고당은 탄수화물이지만 원래 생유에 존재하는 영양소도 아니고 함량이 지극히 적으므로 시판 강화 신선 유 제품에는 올리고당을 첨가할 수 없다. 사실 세계 시장에서 올리고당이 첨가된 강화 신선유제품은 아직 없다.

다) 본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또는 28조를 위반하게 되어, 동법 제47조 제1항 제7관, 제45조 제1항 또는 제52조 제1항 제3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3) 과·채즙 첨가를 주장하는 포장음료 표시 규정 (첨부자료22)

본 규정이 추가된 후부터:

가) 과·채즙이 10% 이상인 제품은 과실즙 또는 채소즙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2가지 과·채즙으로 혼합된 제품은 원료인 과일, 채소 이름을 모두 제품명에 제시하거나 “종합과(채)즙”, “혼합과(채)즙” 또는 동등 의미를 지닌 표시를 해야 한다.

나) 과·채즙 함량이 10% 미만인 제품은 내용물 명칭 외에는 “과·채즙”으로 표시할 수 없고 눈에 띄게 “과(채)즙 함량 10% 미만” 표시를 하거나 과실즙 또는 채소즙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다) 과·채즙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은 “무(无)과(채)즙” 또는 동등 의미의 표시를 해야 한다. 과일명 또는 채소명이 제품명에 들어갈 경우 “맛”, “풍미” 등 표시와 함께 넣어야 한다.

라) 겉포장 정면 눈에 띄는 곳에 과실즙 또는 채소즙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거나 “종합 과(채)즙”, “혼합 과(채)즙”, “과(채)즙 함량 10% 미만”, “무과(채)즙” 또는 동등 의미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글자 색깔은 바탕색과 확연히 달라야 하고 크기는 본 규정 6번째 표에 부합해야 한다.

마) 본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또는 28 조를 위반하게 되어, 동법 제47조 제1항 제7관, 제45조 제1항 또는 제52조 제1항 제3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 상기 3품목의 규정은 중앙 주관기관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공포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 식품 알레르겐에 관한 새 규정은 2015년 7월 1일(제조날짜 기준)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포장식품의 내용물에 관한 규정이 제시된다. 새우, 게, 망고, 땅콩, 우유(우유에서 추출된 락티콜 불포함), 계란 등 6가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제품은 해당 제품의 용기 또는 겉포장 눈에 띄는 곳에 알레르기 유발 내용물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제품에는 ○○이 첨가되었습니다”, “본 제품에는 ○○이 첨가되어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드실 수 없습니다.” 또는 동등 의미의 표시를 해야 한다.

표 4-3.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중점 수정내용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식품표시에 관한 수정 부분	상세내용
식품첨가물 명칭	모든 식품첨가물 명칭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하며 용도만 표시하는 명칭으로 표시할 수 없다.
식품 중 향료성분 표시	식품에 첨가된 향료성분은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성분이 천연향료인 경우 “천연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제조업체 표시	제조업체의 표시를 강제로 요구하지 않지만 대만 책임 업체는 표시해야 한다.
모든 식품 내용물 표시	함량이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2가지 이상 성분의 혼합물은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특정 제품은 내용물 주성분의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로써 3가지 제품의 우선 시행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는 지속해서 국제규범, 각 계의 관심 의제와 산업 현황 등에 근거하여 차츰 규정을 세우고 공포할 예정이다.

-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3년에 수정, 공포된 시판 포장식품 영양성분 표시 규정과 상기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된 시판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주장 규정에

다 올해 수정된 식품안전위생관리법(첨부자료1)을 통해 식품표시와 영양성분 주장에 대한 규정은 엄격해지고 처벌도 가중되었다.

2 식품첨가물 규정

-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허용량 및 규격 기준 (첨부자료4)에 의하면 식품첨가물은 그의 용도에 따라 방부제, 살균제, 항산화제, 표백제, 보색제(保色劑), 팽창제, 품질개선용제·양조용제·식품제조용제, 영양첨가제, 착색제, 향료, 조미제, 점조제(호료), 결착제, 식품공업용 화학약품, 용제, 유화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대만에서 제조된 식품과 외국에서 수입된 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은 모두 제품명, 규격, 사용범위와 허용량에 따라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허용량 및 규격 기준”(첨부자료4)에 부합해야 한다. 위생복지부가 공포, 지정한 식품첨가물은 검사신청을 해야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첨부자료1)의 표시규정에 따라 식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표시해야 이를 제조, 가공, 조제하거나 포장방식을 바꾸거나 수입, 수출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을 불법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식품을 몰수, 처분하며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내린다.
- 2014년부터 식품업자 등록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업자의 등록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식품업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대만과 외국 식품첨가물의 제조, 수입 및 판매 관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서 설립한 식품첨가물 등록·관리시스템과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로부터 등록한 자료는 위생 기관의 조사와 검사를 통해 불법 제작된 식품첨가물의 판매 방지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 잔류농약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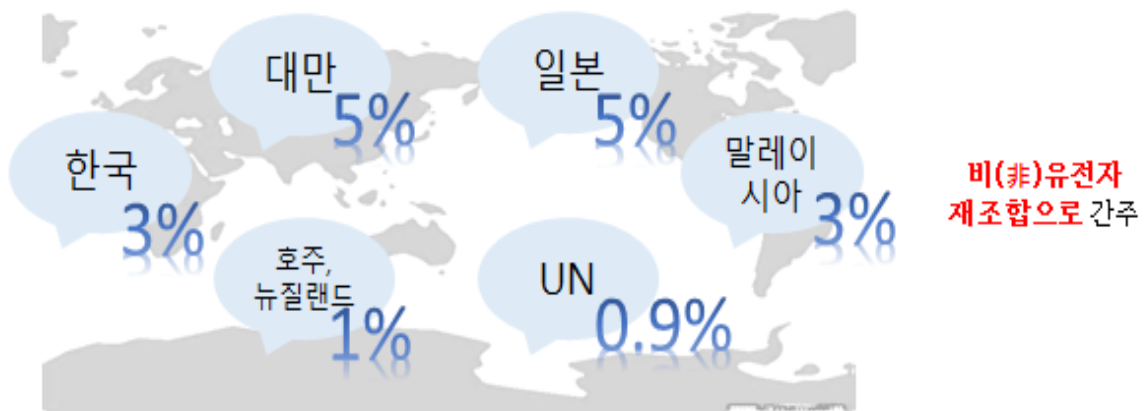
- 농약 허가의 등록과 농약 잔류 허용량의 제정은 각각 행정원 농업위원회와 위생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대만 국민의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국제규범을 참조하고 대만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수요와 대만인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규정을 세운다. 대만인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 각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종류와 수량도 바뀌고 있다.
- 각 나라 농작물의 재배환경이 다르므로 병해충방지 현황과 농약의 사용방식도 대만과 다르므로 대만인의 식품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수입 농산품의 농약 잔류 허용량의 신청원칙과 기준을 수정하였다. 또한, 각 나라의 농약 사용과 허가량을 참고하고 각 농작물의 총 섭취량으로 인한 누적 리스크를 고려한 뒤,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행정원 농업위원회 전문가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고 허용량 기준을 세웠다.
- 2014년 6월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공포한 농약 잔류량 허가기준(첨부자료5)의 수정 내용은 수입 농산품의 농약 잔류 허가량의 신청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대만인의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행정원 농업위원회와 함께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의회(諮議會)에서 한 리스크 평가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농약의 잔류량 허가기준(첨부자료5)을 추가, 수정하였다.

4 유전자재조합식품 규정

-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2014년 4월에 “육류 가공식품업”, “유제품 가공식품업”, “수산물 식품업”, “도시락업”, “식품첨가물업”과 “유전자재조합식품 원료업”의 제조, 가공, 조제와 수입업자의 식품 추종시스템 설립에 대해 예고하고 업계, 정부, 학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속출한 식품안

전문제로 대만인들은 아직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감안하여 식품·약물관리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 또는 “비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를 해야 할 제조, 가공, 조제와 수입업자도 식품 추종시스템 등록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모든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수입 전에 수입 식품 검사 외에 유전자재조합 식품 검사도 받아야 하고 세관검사를 통과해야(식품 기본 서류 심사, 표시와 위생기준 기준 검사 포함) 대만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 또한 허가받지 않은 유전자재조합 성분이 첨가된 수입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원료에 관한 년도 검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비의도적으로 첨가된 유전자 재조합 원료의 첨가 허용량



식품·의약품 관리서는 올해 5월에 비의도적으로 첨가된 유전자 재조합 원료의 첨가 허용량을 **3%로 수정함**을 공포하였고,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차츰 0.9%로 수정될 예정이다.

그림 4-7. 유전자재조합 원료의 첨가 허용량

-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가 2014년 5월에 제정한 새 초안 예고의 중점은 바로 비고의(非故意) 첨가허용량을 현재의 5%에서 3%로 수정하는 것이며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첨가량이 3% 이하인 제품은 모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표시부실 또는 표

시하지 않은 식품업자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첨부자료1)을 위반한 것으로 벌금 TWD 4만~400만이 징수될 것이다.

- 대만 사회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비고의 첨가허용량을 UN 기준인 0.9%로 낮추기 바라는 추세이므로 식품·약물관리서는 새 규정의 시행 결과, 추종시스템과 검사시스템 등 대처 방안 및 원료의 공급 상황에 따라 차츰 검토하여 0.9%로 낮출 예정이다.

5 GMP, GHP, CNS 인증제도

1) GMP제도

- 대만 GMP제도가 25년 시행되면서 대만 식품 제조과정 중의 제품품질과 위생안전의 자율적 관리제도가 설립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식품 GMP의 강제시행에 대해 입법하였고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선진국도 업체들이 GMP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근년 대만 식품안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해온 GMP제도의 신뢰도가 급락하였다. 행정원이 9월에 공포한 “8대 식품안전 강화 대책” 중 제8항 “식품 GMP 개혁”에 의하면 식품 GMP제도의 강화 대책은 2015년 1월 1일로 앞당겨서 전면 시행할 것이며 새 제도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1) 같은 공장에서 제조한 동종 제품 전부 인증

- 몇 달 전에 일어난 썩은 기름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77가지 유제품 중 12가지만 식품 GMP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있는 유제품이 식품 GMP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식품 GMP 인증제도에 대한 각계의 질의와 비난이 쏟아졌다. 따라서 행정원은 경제부로부터 “GMP제품만 있고, GMP 제조업체는 없다(한 제조업체의 모든 제품이 GMP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는 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2) 철저한 원천 관리

- 대만 GMP기준은 국제적으로 엄격한 편이지만 착실하게 집행하지 않아 형식으로만 남게 되었다. 최근 일어난 식품 안전 사건의 주요 원인은 원료 공급업체를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불법 원료가 식품 가공사슬에 유입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원료 생산사슬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 공급업체의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식품원료 공급업체가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세입 증가, 업체 간의 거래가 기록되어 앞으로 또 식품안전문제가 일어나면 즉시 식품의 유통을 파악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추정, 관리 강화

- 이전에는 업체를 추정하는데 검사관이 부족하고 검사시간이 정기적이므로 일부 식품업체는 사행심을 가지고 검사를 피했다. 새 GMP제도가 시행되면 검사관의 수를 대폭 늘릴 예정이며 검사 관련 교육도 제공될 것이다. 또한, 검사가 없다는 이유로 식품 제조과정을 소홀히 할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검사 외에 추가로 매해 최소 2회에 걸쳐 예고 없는 표본 추출검사 할 예정이다.

(4) 국제 추세에 맞춤

- 국제무역이 발달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위생 인증도 국제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대만은 GMP 외에 ISO 22000도 도입하여 식품 공급업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근거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ISO 20000은 식품 사슬에 있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식품공급사슬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 효과를 향상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새 GMP제도가 시행되면 한 번의 검사를 통해 ISO 20000과 GMP인증서가 발급될 것이고, 새 GMP는 GHP와 ISO를 결합함으로써 업체들이 법률,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여 대만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다.

(5) 계약 및 증서 발급

- 새 식품GMP제도가 시행되면 “식품 GMP 인증체계추진회 소집부문”에서 식품 GMP 인증서를 발급할 것이다. GMP 인증서의 발급업체는 농위회, 식품약품관리서와 경제부가 검토하고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대만 식품GMP 발전협회는 식품GMP인증제도의 추진만 진행할 것이고 계약 작업은 식품소, 곡물연구소와 같은 검증 기관이 진행할 것이며, 인증서 발급은 원래의 식품GMP 발전협회에서 경제부 공업국으로 대체되어 나라에서 증서를 발급할 것이다.

2) GHP제도

- 식품 GHP제도의 주관기관은 위생복지부이며 이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참고자료 1)을 통해 식품 제조업체의 자발적 관리 시스템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식품업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제, 포장, 운송, 보관, 판매하는 장소, 시설 및 품질관리제도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식품의 위생,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식품이든 이는 생산, 판매 과정에서 강제로 “양호 식품 위생 규정”을 준수하여 식품 안전 위생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GHP기준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예: HACCP)이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식품업자의 수준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식품GHP의 요구는 식품안전관리법(참고자료1)에서의 “최소 요구”인 것으로 제조과정의 관제, 화물 보관과 운수에 대한 요구, 품질 위생 관리 및 고객 컴플레인 등이 포함된다. 반면, 식품GMP는 더 자발적이고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것이다. 상술 요구뿐만 아니라 원료의 추정, 검사 작업, 공장 구역 시설 관리 등도 포함된다. 간단히 말하면 GHP는 GMP인증의 일환이다. 두 인증의 주관기관은 다르지만 목적은 모두 식품안전 위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표 4-4. GMP와 GHP 비교

	GMP	GHP
요구방식	자발성	강제성
진입장벽	높은 기준	기본 요구
마크발급	마크 있음	마크 없음
주관기관	경제부	위생복지부

3) CNS제도:

- 중화민국 국가 기준 (Chinese National Standards, CNS) 은 대만 정부가 대만, 풍후(澎湖), 진먼(金門) 및 마주(馬祖)에서 시행하고 경제부에서 주관, 시행하는 국가 기준이다. CNS제도는 국가 기준 실험실에서 모든 제품, 식품 또는 정보 기술 등 각종 물품을 검사하는 인증 제도이다. 현재 15,000개가 넘는 국가 기준 검사 항목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기준검사는 주관기관이 기준의 어느 한 부분을 법규로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이다. 식품을 예로 들면 식품 중의 미생물 검사, 포장 검사부터 시작에서 식품명까지 CNS에 따라 해당 식품의 기준을 판정할 수 있다.
- 위생복지부 또는 행정원 농위회는 식품업자가 수입한 제품의 리스크에 따라 후속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식품위생관리법과 CNS 국가기준에 따라 제품의 표본 추출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aT기획조사 2014 - 대만 편

대만 최신 식품위생규정과 한국식품 수입요건

CHAPTER

5

식품 안전 등록 시스템

01. 시스템 소개

02. 등록방식

03. 주의사항

1 시스템 소개

- 최근 몇 년 대만에서는 심각한 식품 안전 사건이 속출되어 식품 안전 의제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늘고 있다. 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는 2012년부터 식품첨가물 등록제도를 추진하여 업체들의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업자들의 자발적으로 자료 등록 및 공개를 지도했다. 2013년 식품위생관리법이 수정된 후,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공포한 품목과 규모에 해당하는 식품업자는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올해(2014년) 식품안전위생관리법(참고자료1)이 수정된 후, 첫 단계에서 개방된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업자는 올해 5월 1일 전에 등록해야 하고, 2단계에서 개방된 판매 유통업자는 10월 1일 전에 등록해야 판매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강제등록을 시행하여 대만 식품첨가물업자의 수량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등록필수(非登不可)”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식품첨가물업자만 제품을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도 사이트에서 우량하고 보장된 식품첨가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2 등록방식

- 수입업자가 등록해야 할 사항은 식품, 식품첨가물 외에 플라스틱류 재질을 사용한 식기도구, 용기 및 포장도 등록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 1) 기입자 기본 정보
 - 2) 회사 또는 상업 등록 정보
 - 3) 수입 품목분류 (소고기제품, 식품첨가물, 플라스틱류 재질이 사용된 식기도구, 용기 및 포장업 등)
 - 4) 분리 포장 및 기타 수입관련 행위에 대한 설명

- 수입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등록 신청하고 인터넷 승인 (MOEACA (工商凭证) , MOICA (自然人凭证) 또는 MOEACA을 MOICA로 전환) 한 후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사이트 : <http://fadenbook.fda.gov.tw/>
- 관련 시스템 조작 방식은 등록필수(非登不可)플랫폼에 올린 PDF을 참조 한다.

3 주의사항

- 1) 수입업체 등록내용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등록내용이 변경된 식품업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식품위생관리법 제47조 제3관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 2) 등록내용이 변경되지 않아도 식품업자는 매년 7월에 등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보고해야 하며, 잘못된 등록내용을 발견하면 즉시 변경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식품위생관리법(첨부자료1) 제48조 제1관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 식품·약품관리서의 식품업자 등록 플랫폼은 2014년에 정식 오픈되었다. 식품업자는 자신이 속한 산업과 속성에 따라 관련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관련 주관기관이 앞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식품제조업과 식품 관련 산업의 정보화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로써 아직은 한국어 조작 설명이 없으므로 언어로 인한 부실한 등록 자료가 없도록 대만수입업체, 세관신고 업체 또는 세관검사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T기획조사 2014 - 대만 편

대만 최신 식품위생규정과 한국식품 수입요건

CHAPTER

참고자료 및 사이트

● 첨부자료1. 식품안전위생관리법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01>

● 첨부자료2. 관세할당 실시규정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50053>

● 첨부자료3. 세관수입세칙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50051>

● 첨부자료4.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허용량 및 규격 기준

<https://consumer.fda.gov.tw/Law/FoodAdditivesList.aspx?nodeID=521>

● 첨부자료5. 농약 잔류량 허가기준

<https://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 첨부자료6. 조류 식품 위생기준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96>

● 첨부자료7. 신선 육류 위생기준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103&k=%u751F%u9BAE%u8089%u54C1%u985E%u885B%u751F%u6A19%u6E96>

● 첨부자료8.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사 규정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145>

● 첨부자료9. 검역을 거쳐야 할 동식물 품목표

http://www.baphiq.gov.tw/content_edit.php?menu=1326&typeid=1360&typeid2=1361

● 첨부자료10. 남한산(南韩产) 복숭아심식나방 숙주 생과일 수입검역조건

<https://www.google.com.tw/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B4QFjAA&url=http%3A%2F%2Flaw.coa.gov.tw%2FGLRSNEWSOUT%2Finc%2FGetFile.ashx%3FFileId%3D8312&ei=fLlIVKqUHsL58QXfiIHQAw&usg=AFQjCNF1DGVOxtsOFz7lyGsxOvvDOICYxw>

● 첨부자료11. 한국 수입 큰 배추와 양배추 관련 규정

<http://www.baphiq.gov.tw/public/Attachment/010259405171.pdf>

● 첨부자료12. 검사를 거쳐야 할 중약재 상품 관련 검사규정

http://www.mohw.gov.tw/MOHW_Upload/doc/%E6%87%89%E6%96%BD%E6%AA%A2%E9%A9%97%E4%B8%AD%E8%97%A5%E6%9D%90%E5%95%86%E5%93%81%E4%B9%8B%E7%9B%B8%E9%97%9C%E6%AA%A2%E9%A9%97%E8%A6%8F%E5%AE%9A_0003830000.pdf

● 첨부자료13. 한국수입인삼도 특별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http://www.baphiq.gov.tw/userfiles/%E4%BA%BA%E8%94%98%20%E5%8D%97%E9%9F%93\(%E9%9F%93%E5%9C%8B\)-1030430.pdf](http://www.baphiq.gov.tw/userfiles/%E4%BA%BA%E8%94%98%20%E5%8D%97%E9%9F%93(%E9%9F%93%E5%9C%8B)-1030430.pdf)

● 첨부자료14. 수입주류 검사규정

<http://law-out.mof.gov.tw/LawContentDetails.aspx?id=FL036525&KeyWordHL=%E9%80%B2%E5%8F%A3%E9%85%92%E9%A1%9E&StyleType=1>

● 첨부자료15. 식품명 표시규범 정리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97>

● 첨부자료16.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표

https://www.google.com.tw/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CCQqFjAB&url=http%3A%2F%2Fasiapc.luk.com.tw%2Fpicture%2Fcom_data%2Fbig5%2F%25A5i%25A8%25D1%25AD%25B9%25AB~%25A8%25CF%25A5%25CE%25AD%25EC%25AE%25C6%25A4%40%25C4%25FD%25AA%25ED980331a.xls&ei=u8BIVLW5K8v48AXX6ICAAQ&usg=AFQjCNHa6ab30NJ14_7eLvJYMqGYnpFxFxWg

● 첨부자료17.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시행세칙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45>

● 첨부자료18. 시판 포장식품 유통기한 평가 안내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88>

● 첨부자료19. 포장식품 영양성분 표시의 준수사항

http://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1011&chk=276d0e89-07b7-4876-a68b-f9d1db92b911#.VEjB8_mUeJF

- 첨부자료20. 시판 포장 미판스(米粉丝, 대만 쌀국수)제품 표시 규정(첨부자료20)
http://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0531&chk=585bc214-652d-423f-9ff1-f975c382b0b2#.VFX5M_mUfyc
- 첨부자료21. 신선유 · 장기보존유 · 조미유 · 우유음료와 분유의 제품명과 표시 규정(첨부자료21)
<http://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0807&chk=22477e4a-8417-46b7-9578-5d7e304e75d4#.VCpF3vmSyJE>
- 과채즙 첨가를 주장하는 포장음료의 표시 규정 (첨부자료22)
http://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0844&chk=13c6aa38-c586-4591-a282-50b734714134#.VCpF_fmSyJE

P13~21 화학명사 한, 영 대조표	
가소제	Plasticizer
불투명제	Cloudifier
팜오일	Palm oil
프탈산계	Phthalates
노로바이러스	Norovirus
클로르헨나피르	Chlorofenapyr
플루페녹수론	Flufenoxuron
벤조피렌	Benzopyrene
디노테푸란	Dinotefuran
아세퀴노실	Acequinocyl
아зок시스트로빈	Azoxystrobin
플루아지남	Fluazinam
스피로디크로펜	spirodiclofen
무수말레인산	maleic anhydride
4-메틸이미다졸	4-Methylimidazole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3-monochloro-1,2-propanediol, 3-MCPD

aT 기획조사 2014

대만 편

대만 최신 식품위생규정과 한국식품 수입요건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 2014. 12.

전 화 : 02) 6300-1119

홈페이지 : <http://www.kati.net>

조사참여 : 대만수출마케터(홍콩aT센터), (재)상업발전연구원

자료문의 : aT 농수산물기업지원센터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4

* 책의 저작권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있으며, 무단전제와 무단게재를 금합니다. 본 자료의 원본은 www.kati.net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